

시민이 먼저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사천농업 주요시책

2020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목 차

▣ 2020년 달라지는 농업·농촌 정책	3
▣ 2020년 부서별 사업 홍보	19
《농축산과》	21
1. 농업인 삶의 질 향상	23
2. 전문 농업 인력 지원	25
3. 가축방역 청정화 사업	30
4. 축산업 경쟁력 제고	31
《미래농업과》	37
1. 친환경농업 지원[시범]사업	39
2. 기술개발 시범사업	44
3. 생활자원 시범사업	45
4. 농촌관광 시범사업	47
《기술지원과》	51
1. 농산물우수관리(GAP) 활성화 지원 사업	53
2. 사천시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55
3. 농산물 수출 지원	55
4.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책추진	57
5. 원예특작분야 사업	61
6.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보급 지원사업	63
▣ 기타 홍보사항	65
【붙임1】 알기쉬운 농업 용어 사전	110

2020년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일정표

2020년 달라지는 농업·농촌 정책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시행(2018년 7월)에 따른 화물자동차 등 등록 당부

-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의 사육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화물자동차는 축산차량을 등록하여야 함**
 - 기존 등록의무 차량 외 가금부산물·남은 음식물 운반차량, 가금 출하·상하차 차량 등 인력운송차량, 농장 화물차량 해당.
 - ※ 기존 등록의무 차량: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깎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 축산관계시설: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및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 처리업체
 - 등록장소: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팀(☎ 831-3784)
 - 신청시 첨부서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
 - 벌칙사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등록사항 변경이나 말소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말소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소유자

소 농장정보 일제정비 등 소 이력제 개선 계획

□ 추진배경

- 소 농장정보 일제정비 및 소 개체 양도·양수시 신고방법 등 개선을 통해 소 이력제 사육단계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 유도 필요

□ 소 농장정보 일제정비 등 이력제 개선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소 이력제 사육단계 개선	구분	현행	개선(안)
	농장경영자 정보 일제 정비	① (농장주 추가) ■ 농장식별번호에 농장번호 (농장주) 추가 가능	①(농장주 추가 제한) ▶ 농장식별번호에 농장번호(농장주) 추가 금지 ▶ '18. 11.16~ 부터
		② (다수 농장주) ■ 농장식별번호 1개에 다수의 농장주 존재	② (실제 농장경영자) ▶ 이력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의 농장경영자 또는 농장관리자 기준으로 변경 ▶ ~'18. 12.15 까지
	이동(양도·양수)신고 의무화	① (양수자 정보 미입력) ■ 소의 양도시 양수자 정보 입력 미흡	① (양수자 정보입력 의무화) ▶ 소의 양도시 양수자 정보를 의무적 입력 ▶ '18.11~'19. 4월 안내·홍보 ▶ '19. 4~'19. 12월 시범운영 ▶ '20. 1월 제도시행
② (가축거래상인 이동신고) ■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 신고의무 없음		② (축산물이력법 개정) ▶ 가축거래 상인 양도·양수 신고 의무화 (이양수 의원 9.17) ▶ 가축시장 경매절차 마련 및 신고정보 보완(시행규칙) ▶ '19. 12월 예정	
이력관리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게 이동신고에 필요한 번호 부여 -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가축거래상인 정보 연계 검토 • 소의 양도시 양수자 정보가 필수로 입력되도록 시스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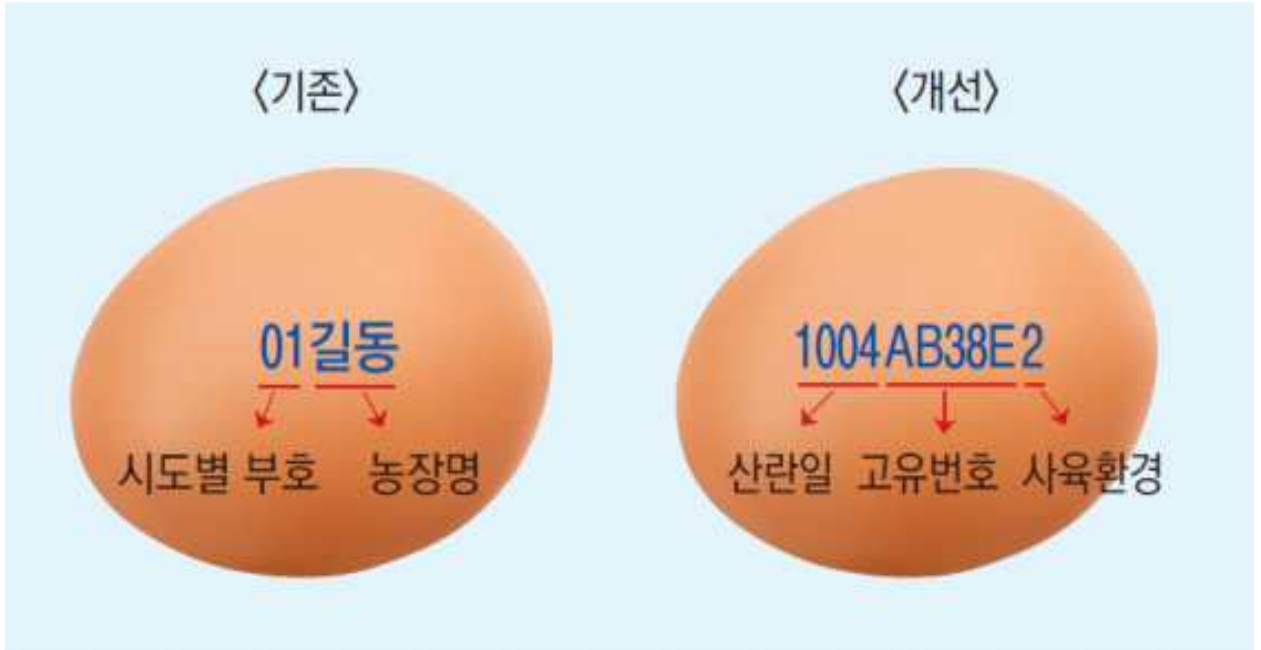
□ 문의처: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팀(☎055-831-3783)

사천축산업협동조합 이력제담당자(☎055-851-5858)

계란 산란일자 의무표시 시행

□ 달걀 사육환경 표시

- 시행일: 2019년 2월 23일
- 난각표시 변경사항



- 산란일: 산란월일
- 고유번호: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또는 등록)시 부여된 5자리 고유번호
- 사육환경: 방사(1), 축사내 평사(2), 개선케이지(3), 기존케이지(4)
- 사육환경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임.
- 위반시

가축사육업 경영하는 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미표시	· 1차 : 경고 · 2차 : 영업정지 7일 · 3차 : 영업정지 15일
	위조/변조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

□ 문의처: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팀(☎055-831-3783)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추진

□ 배경

- '19.9.16.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국내 최초 발생
- '10.9.17.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연이어 추가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
- 최근 발견지점 : (10.29.)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10.31.)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11.01.)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 조치사항

- 가. 돼지 방목사육 금지 조치
- 나. 잔반급여 금지 조치
- 다. 양돈농가는 인근 야산 등 출입금지, 야외 활동 이후 장화 갈아신기, 구서·구충 등 방역관리 철저
- 라. 발견시 발견지점으로부터 10km 내 양돈농가 이동제한 및 예찰, 소독강화, 울타리 등 야생멧돼지 침입차단 시설 설치 및 보완
- 마. 가축운반차량 방역관리 철저
 - 1) 도축장 출입시 가축운반차량 운전자가 계류장에서 생축을 하차하는 행위 금지 (운전자는 계류장에서는 차 안에 대기하고, 도축장 직원이 생축하차)
 - 2) 차량은 농장 내,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 도축장 입구 등 4단계 소독 실시 후 이동
 - 3) 생축 하차 후 차량은 도축장 내 세척·소독시설 이용, 잔존물 완전히 제거하고, 차량 내·외부 소독 철저

□ 문의처: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팀(☎055-831-3784)

닭, 오리 사육농장 폐쇄회로(CCTV) 설치, 축사동별 전실 설치 의무

□ 배경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닭, 오리 사육농장 폐쇄회로(CCTV) 설치, 축사동별 전실 설치 의무
 - 축사동별 전실 설치 의무 시행일 : 2018. 11. 1.부터 시행
 - 닭, 오리 사육농장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 시행일 : 2019. 7. 1.부터 시행

□ 주요내용

-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 설치
 -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 영상기록은 촬영일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
-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 을 설치
 -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고
 -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해야 하며,
 -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 신어야 하며,
 -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 위반시 과태료

-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주의 당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시행」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시행」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행)시기:**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여 농경지 살포하여야 합니다.

- **근거:**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유기물이 분해된 상태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등 부숙의 정도를 말합니다.

- **부숙도 검사 주기 및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
 - 허가대상 사육시설: 한우 젖소 축사 900㎡ 이상, 돼지 1,000㎡이상, 말 900㎡ 이상, 닭 또는 오리 3,000㎡ 이상
 - 신고대상 사육시설: 한우 젖소 축사 100㎡이상 900㎡미만, 돼지 50㎡이상 1,000㎡미만, 말 100㎡이상 900㎡미만, 닭 오리 200㎡이상 3,000㎡미만, 양(염소) 200㎡이상, 사슴 200㎡이상, 개 60㎡이상
 -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별표 1]에서 사육시설 규모 규정
 -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퇴비 부숙도 검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기관:** 우리시에서는 2020년 1~2월 중에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장비 구입 및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 예정.
 - 부숙된 퇴비와 미 부숙된 퇴비의 더미 구분 관리 필요. 농가에서 부숙도 검사 시에는 부숙된 퇴비의 시료만 500g 비닐봉투에 채취하여 검사 의뢰.

□ **퇴비의 부숙도 결과 적용기준**

- 1,500m² 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1,500m² 미만: 부숙중기

□ **부숙된 퇴비를 만들기 위한 방법**

-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월 1회(주 1회 권장) 이상 교반 필요(사육시설 면적 1,500m²이상은 반드시 월 1회 이상 교반하여야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 부숙된 퇴비와 미 부숙된 퇴비 더미를 구분 관리. 퇴비 더미는 2m 이내로 쌓기.
-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퇴비사를 원래의 퇴비사 용도로 복구 후 사용
- 분뇨 발효촉진을 위해 미생물 제제 사용(농업기술센터에서 화요일 배부하는 BM 활성수 활용)

□ **퇴비 부숙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주의 당부)**

-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액비관리대장 미 작성 및 미 보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추가 자세한 사항 확인:** 사천시 축산팀 가축위생팀 블로그

<http://blog.naver.com/831-3781> 에서 추가 상세자료 확인 당부

□ **문의처: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팀(☎055-831-3785)**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주요 개정내용 안내

□ 개정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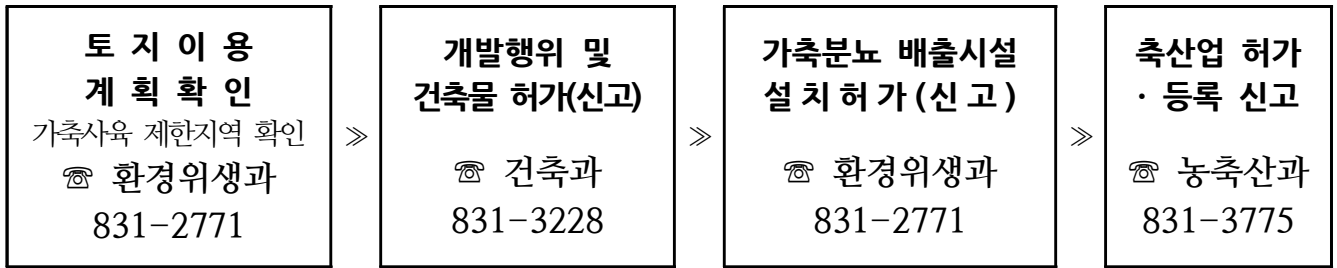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축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 주요 개정내용('20.1.1일 시행)

구 분	주요 개정내용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으로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 매몰지 확보 (토지임대계약, 가축처리계획으로 대체 가능) 추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사육업 허가 금지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이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폐업에 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 받은 자에 대한 재허가 금지기간 연장(1년→2년)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축산법 상 허가요건인 시설·장비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상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등 규정 위반으로 전염병을 발생·확산시킨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토록 규정 신설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	○보수교육 주기를 허가받은 자 1년에 1회 이상(현행: 2년에 1회), 등록된 자 2년에 1회 이상(현행: 4년에 1회)으로 강화
	○질병·휴업·사고 등 보수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토록 근거 신설
제53조(벌칙)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 강화(1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3년/3천만원)
제56조(과태료)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500만원 → 1천만원)
	○부과 사유에 축산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추가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신청안내

가. 허가 및 등록 절차



나. 축종 및 면적기준

축 종	사육시설 면적	등록 및 허가
소, 돼지	50㎡ 이하	등 록
	50㎡ 초과	허 가
닭, 오리	10㎡ 미만	등록 제외
	10~50㎡ 이하	등 록
	50㎡ 초과	허 가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10㎡ 미만	등록 제외
	10㎡ 이상	등 록
양, 염소, 사슴	사육시설 면적 관계없이	등 록

※ 등록제외 축종 :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관상용 조류, 지렁이

다. 시설, 사육두수 및 교육기준(축산법 시행령 별표1)

1) 허가제

가) 관련 법에서 정한 사육시설·소독시설·방역시설·출입금지 안내판 등

나)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준수, 의무교육 24시간 이수

다) 허가제한 위치기준

- 지방도로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
- 축사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정액등처리업체 등)에서 500m 이내 닭,
-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준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2) 등록제

가) 사육 및 소독시설

구분	시설 및 장비
사육시설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나) 의무교육 6시간 이수

□ **교육이수 안내**

가.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 (집단)	허가	신규 허가 신청자	24시간
	등록	가축사육업	6시간
		가축거래상인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보수 교육 (집단, 온라인교육)	축산업 허가자		6시간
	등록	가축사육업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	4시간

* '20년부터 보수교육 주기 단축 : (허가) 2년 → 1년, (등록) 4년 → 2년

나. 교육기관 : 축협, 대학교, 관련기관 등

다. 신청방법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http://www.farmedu.kr>)

→ 문의사항 ☎ 1833-3917 전산오류 문의 ☎ 031-738-8322

□ **문의처: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팀(☎055-831-3775)**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안내

1. 불법 건축물 현황측량: 건축사무소 방문 협의 후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설계 사무소에 측량 의뢰(수수료 납부)



2.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 자진신고서 작성 후 시청 건축과 제출
 ※ 국·공유지 관리청에서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적법화 가능하나 관리청과 협의가 안되는 국·공유지의 무허가 부분은 철거 후 적법화



3. 이행강제금부과·납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계고 후 부과 시 납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과에 직접 제출 또는 설계사무소 대행
 ※ 구비서류 : 신고서, 배치도, 평면도(자가설계가능), 타인소유 시 대지사용승낙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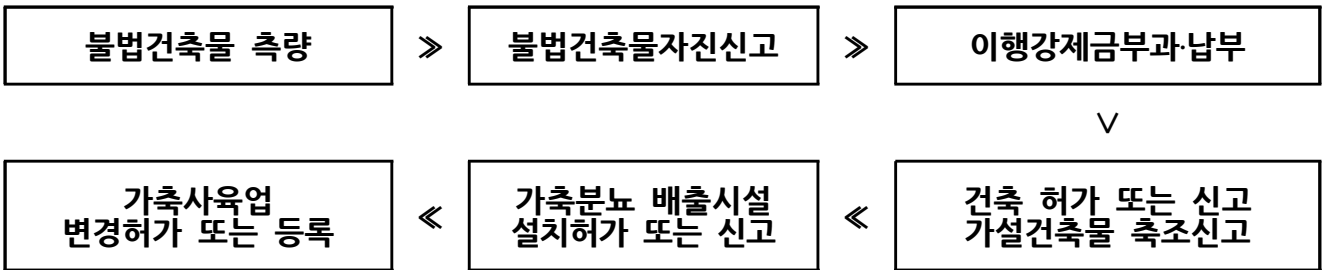
5. 건축허가·신고: 건축허가신청서(400㎡초과) 또는 건축신고서(400㎡이하) 건축과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설계도면(건축사무소 설계), 대지사용승낙서(타인 소유 시) 등



6.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환경위생과에 제출
 ※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가축분뇨예측내역서,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 사업장배치도, 가축분뇨 배출 배관도 등



7. 가축사육업 변경허가·등록(필요시): 농축산과에 제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도〉

○ 기타문의: 사천시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55-831-3228)

사천시청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055-831-2771)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팀(☎055-831-3775)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축산분야 특별대책 추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축산분야 특별대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축산농가에서는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축산분야 특별대책 농가 이행 주요내용

가. 시설 내·외부 청소, 분뇨·퇴액비 외부노출 금지(피복 등 조치), 퇴비 미생물 살포 및 교반(뒤집기) 등 실시

나. (시설 관리) 겨울철 분뇨 및 퇴비·액비의 적정관리 강화

< 겨울철 시설관리 방법 >

소(한우)	돼지	가금	분뇨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내 깔집 동결 방지(깔집교체) · 자연 환기(맑고 온도가 높은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이나 시설 훼손 부분 점검, 수리 · 슬러리 피트 용량을 확보하고, 부족시 사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식 축사는 적정 환기 추진 · 배출된 계분이 잘 발효되도록 퇴비사 보온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이나 시설 훼손 부분 점검, 수리 · 탈취탑, 악취저감 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관리

다. (부속 관리) 퇴비·액비 부속 관리를 통한 암모니아 발생량 저감

라. 퇴액비 살포 전 사용상의 편의 등을 위해 농경지 인근 장소에 피복 등 조치 없이 일정기간 보관하는 관행 개선

마. 농가에서는 붙임 안내 홍보물 활용

□ 미세먼지(암모니아) 발생 및 저감 기술

가. (악취물질) 가축분뇨에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22종의 악취 물질이 있으며, 암모니아(약 60%), 황화수소(약 20%내외)가 많은 부분 차지

1) 암모니아는 미세먼지의 전구물질로 지목되고 있고 있어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저감 관리가 필요하나, 미세먼지로 전환량에 대한 추가연구 필요

* 농진청에서 '19~'21년간(30억원) 미세먼지 발생량 및 전환량, 저감방법 등 연구 중

나. (저감 기술) 일반적인 악취 저감 방법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 등이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축사 밀폐후 저감시설을 이용하여 저감

- 1) **(물리적)** 악취물질을 강제환기 후 저감시설에서 물 등을 안개 분무 하여 대기로 배출하는 악취물질을 감소(안개분무, 바이오커튼)
- 2) **(화학적)** 악취물질을 강제환기 후 저감시설에서 황산,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등을 이용하여 악취물질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저감(습식세정탑)
- 3) **(생물학적)** 가축에게 미생물 급여, 축분내에 미생물살포, 저감시설에 미생물 등을 투입하여 미생물에 의한 악취물질 분해작용으로 저감(바이오필터)

다. **(저감 방법)** 축산에서 악취발생은 가축이 사육되는 축사 내부, 가축분뇨 처리과정, 퇴비액비 살포 과정 등에서 발생

- 1) **(축사 내부)** 대부분 개방형 축사와 깔짚 등을 사용하는 한우, 젖소, 가금은 미생물 급여, 깔짚에 미생물 살포 및 교반을 통하여 부숙 촉진,

가) 돼지축사, 산란계 축사 등은 밀폐하여 습식세정탑, 바이오필터 또는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등을 이용하여 악취저감

- 2) **(분뇨처리)** 퇴비화시설은 기본적으로 밀폐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저감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나 농가형 소규모 퇴비화 및 액비화시설은 미생물 사용 및 교반을 통하여 부숙을 촉진시켜 악취저감

* 자연 부숙시 6~12개월 소요되며, 미생물 살포 및 교반시 4개월 소요

가) 공동자원화 시설은 '11년부터 밀폐화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악취 포집 처리

- 3) **(퇴비액비 살포)** 부숙된 퇴비·액비 살포후 농경지를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통하여 악취물질이 대기중으로 증발을 되는 것을 최소화

2020년 부서별 사업 홍보

농 축 산 과

1.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담당: 농축산과 농정팀 (☎831-3760)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지속적인 농업육성정책 추진으로 농촌활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 농업인력 양성과 선진농업 기반 구축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

1-1.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용자대상: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용자규모: 추후 통보
- 용자한도 -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자금 5천만 원
- 법인 및 생산자단체: 운영자금 5천만 원, 시설자금 3억 원
- 용자조건 -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1-2. 상반기 사천시농어촌발전자금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용자대상: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용자규모: 추후 통보
- 용자한도 -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자금 5천만 원
- 생산자단체: 운영자금 5천만 원, 시설자금 1억 원
- 법인 및 생산자단체: 운영자금 5천만 원, 시설자금 3억 원
- 용자조건 -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용자취급기관: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 용자시행계획: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부족 자금에 대하여 지원

1-3.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 15 ~ 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금액: 재해안전공제료 보험료의 약 67% (자부담 33%)
- 신청기간 및 장소: 연중 /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

1-4.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신청분야: 총 6개 분야 85개 사업(자율사업70, 공공사업15)
 - 식량분야: 농지구묘화 사업 등
 - 원예·식품분야: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보완사업 등
 - 임업 및 산촌분야: 조림·숲 가꾸기 지원 사업 등
 - 농촌개발분야: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등
 - 축산분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 지특회계분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등
- ※ 2019 사천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현황: 총 75개 사업 / 63,577,941천 원
- 신청대상
 - 자율사업(59개 사업):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제외), 생산자단체 등
 - 공공사업(12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 신청장소: 담당 실과소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조건·방법 등: 세부사업별 조건 및 방법은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고
 - ※ 자료검색: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우측상단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 전화문의: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정팀(☎055-831-3763)

1-5.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은 제외
 -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하며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부부합산)인 농어가
- 지원금액: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 전액
- 신청기간 및 장소: 연중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6. 2020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 사업개요

- 기간/장소: 2020. 10. 16.(금) ~ 10. 18.(일) [3일간] / 사천시청 노을광장
- 주 관: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 추진위원회
- 주요내용: 전시, 판매, 시연, 체험, 시음·시식, 부대행사 등

2. 전문 농업 인력 지원

사업담당: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831-3774)

2-1.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영농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사업비: 22,500천원 / 5명 (1인당 4,500천원/ 보조 85%, 자부담 15%)
- 신청기간(연중)
- 지원일수: 90일(1일 42,500원)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명)	사업비내역(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5	22,500 (100%)	-	4,500 (20%)	14,625 (65%)	3,375 (15%)

2-2.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운영지원

미래농업을 선도할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인력(CEO) 육성과 FTA협정 확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및 농업경쟁력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모집대상: 사천시 농업인으로서 품목별 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남,여)
지역농업을 선도 할 수 있는 자
- 사업량: 3개 대학교 10과정, 180명
(경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 사업비: 42,840천원(1인당 교육비 2,380천원/ 보조 70%, 자부담 30%)
- 신청기간: 2020. 1. ~ 3.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명)	사업비내역(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지원	18	42,840 (100%)	-	14,994 (35%)	14,994 (35%)	12,852 (30%)

2-3.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대상: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영농종사 10년 이하
- 사업량: 후계농업경영인 5명
- 용자한도: 1인 최대 3억원 한도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까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 2020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4.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대상: 신청연도 현재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인 자로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량: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14명
- 정책자금: 1인 최대 3억원 한도,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영농정착금: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2년차 90만원(12개월), 3년차 80만원(12개월)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까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명)	사업비 내역(천 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14	125,886 (100%)	88,120 (70%)	11,330 (9%)	26,436 (21%)	-

※ 2020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5.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선도 농업법인 등에서의 청년 실무연수를 통해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 하도록 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대상: 신청연도 현재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인 자로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량: 1명
- 지원내용
 - (청년)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청년
 - (농업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 지원조건: 인턴 1인당 월10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원
* 월 급여의 50%(월 100만원) × 6개월 = 600만원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연중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명)	사업비 내역(천 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1	6,000 (100%)	-	1,800 (30%)	4,200 (70%)	-

※ 2020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6.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건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대상: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사업량: 5명

○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모두 활용 가능
- 지급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까지 /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량 (명)	사업비 내역(천 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1	60,000 (100%)	-	18,000 (30%)	42,000 (70%)	-

※ 2020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7.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사업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영농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2. ~ 12.
- 지원대상: 마을 공동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당 20명 이상 급식일수 25일 이상 급식가능한 마을
- 지원내용: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등 지원
- 사 업 비: 42,000천원 / 21개소 (개소당 2,000천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별도 계획수립 중/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업비 내역(천 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도비)	11	22,000 (100%)	-	6,600 (30%)	15,400 (70%)	-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자체)	10	20,000 (100%)	-	-	20,000 (100%)	-

※ 2020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8.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신규농업인에게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대상
 - 귀농연수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또는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 선도농가: 관내 신지식 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등
- 사업비: 30,000천원(귀농연수생 5, 선도농가 5)
- 지원내용: 기술습득, 정착 과정 상담·멘토 및 초기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2. ~ 3.까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명)	사업비내역(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귀농인 5명 선도농가 5명	30,000 (100%)	15,000 (50%)	-	15,000 (50%)	-

2-9.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및 가사노동으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 및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사업비: 169,000천원 / 1,300명(1인당 130천원)
- 지원내용: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 3.까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명)	사업비내역(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1,300	169,000 (100%)		50,700 (30%)	84,500 (50%)	33,800 (20%)

3. 가축방역 청정화 사업

사업담당: 농축산과 가축위생담당 (☎831-3781)

3-1. 소독시설 설치 지원

농가 자율방역 유도를 위한 농장내·외 소독시설 설치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월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축산단체
- 사업내용
 - 농장출입차량, 대인 소독용, 축사 내 이동식 소독장비 지원
 - 축사 내·외 소독용 이동식 소독기 지원

■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공급량 (개소)	사업비 내역(천원)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부담	
소독시설 설치지원	2개소	8,000	1,200	2,800	4,000	'15~'19 지원 대상자제외

※ 1개소당 사업비 단가 : 4,000,000원/1개소

3-2. 돼지 쉼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

쉼코바이러스(PCV-2) 예방주사 공급으로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관내 양돈농가
 - ※ 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19년 구제역 미실시,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하 등 과태료가 부과된 농가는 '20년 백신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방역본부에서 시료채취 시, 비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분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20. 1월경(상반기), 2020 7월경(하반기)
 -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가 및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 통보 예정
- 접종방법
 - 모돈 : 종부 3~4주전 -자돈 : 3주령(21일령)

■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비 내역(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돼지 쉼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180,000	54,000	16,200	37,800	72,000	

4.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담당: 농축산과 축산팀 (☎831-3775~9)

4-1. FTA대응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

FTA 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발전 시책으로 국내·외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및 조건: 축산농가, 축협 등
- 사업수 및 사업비: 14개 사업, 974,506천원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금)까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축산단체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지원금액(천원)			지원내역
		계	보조	자부담	
14개 사업		974,506	529,798	444,688	
소 보정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1,085개	80,000	40,000	40,000	소 보정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70천원/1대)
한우(젃소)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	20대	20,000	10,000	10,000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 (1,000천원/1대)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60대	18,000	9,000	9,000	환풍기 및 제어기 지원 (300천원/1대, 일부라도 무허가축사 농가 신청 제외) ※18~19년도 수혜자 신청 후순위
혹서기 가축피해방지 송풍팬·안개분무기 지원	환풍기 160대	54,700	25,000	29,700	환풍기 (환풍기 300천원/1대)
축사재난예방 시스템 (CCTV) 지원	10대	30,000	15,000	15,000	CCTV
사료저장조 온도조절장치 지원	8대	5,000	3,500	1,500	온도조절장치 350천원/1대, 액상급이기 900천원/1대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2,708포	81,240	48,744	32,496	사료첨가제(비타민제, 규산염제)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	1,670두	23,380	14,028	9,352	초유 면역증강제 구입비 지원(14천원/1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1,223톤 (톱밥 기준)	234,000	117,000	117,000	톱밥, 왕겨 ※ 축산농가 약취방지 개선 중복신청 불가
축산농가 약취방지 개선	36톤	180,440	90,220	90,200	환경개선제(생균제 등) ※ 수분조절제 중복신청 불가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	20농가	3,146	3,146		축사시설 전기 안전점검 지원 (한우사 145,360원/1개소, 돈사 242,000원/1개소, 육계사 169,800원/1개소)
가축재해보험(가축공제료) 지원	보험가입자	106,000	53,000	53,000	가축공제 보험료 지원
학생승마체험 지원	2개소	138,600	101,160	37,440	승마체험비 지원 일반승마(320천원/명), 사 회공익(생활)(320천원/1명), 사회공익(재활)(420천원/1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개소			용자금, 자부담	축사 신·개축, 축산시설 방역시설 등

4-2. 한우 브랜드 육성

코뚜레사천한우의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고품질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및 조건: 한우농가, 축협, 수의사, 수정사
- 사업수 및 사업비: 14개 사업, 504,800천원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금)까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축산단체

■ 추진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지 원 금 액(천원)			지원내역
		계	보조	자담	
14개 사업		504,800	356,800	128,000	
한우브랜드 종축정액 지원	2,000두	20,000	20,000	0	한우 정액 시 구입 후 공급 (한우 정액 10,000원/1두, 5,000원/1두, 3,000원/1두 중 농가에서 선택한 정액 공급)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6농가	4,800	2,400	2,400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800천원/1개소)
코뚜레사천한우 거세장려금 지원	1,062두	85,000	85,000	0	한우 수소 거세 장려금 지원 (80천원/1두), 축협에서 추진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110두	55,000	27,500	27,500	수정란 및 시술비 등 지원 (500천원/1두), 축협에서 추진
한우개량사업 (암소유전능력평가)	1개소	10,000	10,000	0	암소 유전능력평가 컨설팅 지원 (10,000천원/1개소), 축협에서 추진
한우 거세 사업	800두	24,000	14,400	9,600	숫송아지 거세 시술료 지원 (30천원/1두), 축협에서 추진
한우 등록 사업	5,000두	30,000	30,000	0	한우등록 심사비 지원 (기초 4천원/1두, 혈통 6천원/1두, 고등 8천원/1두), 축협에서 추진

한우 초음파 진단료	1,000회	20,000	14,000	6,000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20천원/1회), 축협에서 추진
한우지에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89두	31,000	31,000	0	한우지에 출하 조건을 만족해서 출하한 경우 육질등급 1++ 400천원/1두, 1+ 300천원/1두 지원, 축협에서 추진
고능력 암소인증 장려금지원	50두	25,000	12,500	12,500	우량암소(엘리트카우, 고능력 암소) 인증장려금(500천원/1두), 인증패 수여, 축협에서 추진
한우 친자감별 사업	3,333조	100,000	50,000	50,000	한우 친자감별 비용 지원 (30천원/1조), 축협에서 추진
한우 우량 유전자기반 조성사업	100두	20,000	20,000	0	관내 우량 송아지 입식 장려금 지원(200천원/1두), 축협에서 추진
한우 인공수정 정보화사업	909두	40,000	20,000	0	인공수정 시술료, 전산등록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료 20천원/두, 전산등록비 2천원/1두), 사천축협, 수정사 추진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000두	40,000	20,000	20,000	안정기준각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20천원/1두), 축협에서 추진

4-3. 젖소 구조개선 사업

낙농작업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농가소득 보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및 조건: 낙농농가, 저소득층 학생 등
- 사업수 및 사업비: 7개 사업, 금608,812천원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금)까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축산단체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지원금액(천원)			지원내역
		계	보조	자부담	
7개 사업		608,812	420,056	188,756	
학교우유급식 지원	2,264명	206,830	206,830	-	저소득층 학생 등 우유급식
젖소능력개량사업 (유우균능력검정 지원)	685두	44,388	26,632	17,756	우유 검정비
젖소능력개량사업 (능력개량 지원)	1,219두	15,594	15,594	-	등록비, 선형심사비, 정액구입비
낙농헬퍼지원	4명	120,000	60,000	60,000	낙농헬퍼 인건비
젖소 세척제 지원	765통	36,000	18,000	18,000	젖소 세척제
젖소 개량촉진 우량정액 지원	800두	16,000	8,000	8,000	우량정액
낙농 친환경 무주유 진공발생기 지원	9대	170,000	85,000	85,000	무주유 진공발생기

4-4. 양봉 · 양돈 구조개선 사업

양돈·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보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2. ~ 2020. 12.
- 지원대상 및 조건: 꿀벌사육 농가, 양돈농가 등
- 사업수 및 사업비: 12개 사업, 금410,700천원
- 신청기간 및 장소: 양봉 - 2020. 1. 7.까지, 양돈 - 2020. 1. 17.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축산단체

■ 추진계획 【양봉사업】

사업명	사업량	지원금액(천원)			지원내역
		계	보조	자부담	
5개 사업		207,700	103,850	103,850	
양봉산업구조개선	5종	73,700	36,850	36,850	벌통(개량·재래), 자동탈봉기, 저온저장고, 사료용해기, 말별포획기
친환경 꿀벌사육 지원 (도비)	1,750kg	14,000	7,000	7,000	화분
꿀벌 육아용 화분 지원 (시비)	7,500kg	60,000	30,000	30,000	화분
벌꿀 자동채밀기 지원	10대	20,000	10,000	10,000	자동채밀기
소초광 지원	20,000개	40,000	20,000	20,000	소초광

■ 추진계획 【양돈사업】

사업명	사업량	지원금액(천원)			지원내역
		계	보조	자부담	
7개 사업		203,000	123,500	79,500	
영북마을(민원지역) 생균제 및 탈취제 지원	2종	24,000	24,000	-	생균제, 탈취제
양돈농가 악취방지용 생균제 지원	800포	20,000	20,000	-	생균제
양돈장용 냉방기 지원	3대	14,000	7,000	7,000	냉방기
돈사 환풍기 지원	20대	6,000	3,000	3,000	환풍기
양돈 사료급이기 지원	30대	9,000	4,500	4,500	사료급이기
양돈농가 악취방지 지원	5개소	50,000	25,000	25,000	악취방지 제품, 장비 등
모돈갱신 지원	160두	80,000	40,000	40,000	모돈

4-5.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및 조건: 조사료 생산 경영체(법인), 축산농가
- 사업수 및 사업비: 3개 사업, 824,000천원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금)까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축산단체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지원금액(천원)			지원내역
		계	보조	자부담	
3개 사업		824,000	668,800	155,200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9,000톤	540,000	486,000	54,000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용 지원 (대상: 조사료 생산 경영체, 60천원/1톤)
조사료생산용(춘파, 추파) 종자대 지원사업	희망량	204,000	142,800	61,200	춘파,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조사료 급이기 지원	5대	80,000	40,000	40,000	조사료 급이기 지원 (16,000천원/1대)

4-6.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장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및 조건: 축산농가, 액비전문유통주체(법인), 퇴비유통전문주체(법인)
- 사업수 및 사업비: 6개 사업, 329,450천원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금)까지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축산단체

■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량	지원금액(천원)			지원내역
		계	보조	자부담	
6개 사업		329,450	288,350	41,100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	1개소	30,000	12,000	18,000 (용자)	퇴비사, 분뇨 처리장비 등
액비저장조 지원	3기	27,000	18,900	8,100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9,000천원/1기)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국비)	600ha	190,000	190,000	0	액비살포비 지원 (250천원/ha) 대상: 액비전문유통주체
친환경 액비살포비 지원(시비)	150ha	30,000	30,000		액비살포비 지원 (200천원/ha) 대상: 액비전문유통주체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	112.25ha	22,450	22,450	0	퇴비살포비 지원 (200천원/ha) 대상: 퇴비전문유통주체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1개소	30,000	15,000	15,000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30,000천원/1개소)

미래농업과

1. 친환경농업 지원(시범) 사업

사업담당: 미래농업과 환경농업팀 (☎831-3810~4)

1-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50ha 내외 / 40,000천원(국비 40,0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 해당필지가 반드시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확인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내용
 - 논: 유기 700천 원/ha, 무농약 500천 원/ha
 - 밭: <과수>유기 1,400천 원/ha, 무농약 1,200천 원/ha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천 원/ha, 무농약 1,100천 원/ha
 - 유기지속직불: <논> 350천 원/ha, <밭> 700천 원/ha,
<채소·특작·기타>650천 원/ha

1-2.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 유희 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 확산
- 농약, 화학비료 사용감소로 농업환경 보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200ha / 60,000천원(시비 60,0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 2.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유희 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녹비용 작물 종자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품목: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 지원 대상농지: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제한조건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농지
 - 37백만 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타 직업 종사자 등

1-3. 새로운 소득가능작목 발굴 사업

- 농촌 노동력의 노약자 및 부녀자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 시장 및 현장판매로 현금화 가능한 작목 개발
- 품종갱신 및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5ha 내외 / 42,000천원(시비 21,000 자부담 21,0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 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동지역 작목반 및 마을
- 사업내용
 - 우량품종 및 우량종근 도입, 포장방법 개선
 - 농기계, 기구를 활용한 재배, 수확, 가공, 출하기술 도입

1-4. 농산물 품질향상 지역특화 사업

친환경 토양개량 및 연작장해 예방 농자재 활용을 통한 토양개량, 작물 생육촉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소득 향상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2개소내외 / 15,000천원(시비 7,500 자부담 7,5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서부상당소
- 지원대상: 농산물 품질향상 사업 희망농가
- 사업내용: 토양개선용 자재 구입

1-5. 고령화에 따른 신소득작목 단지조성

농업인의 활력증진과 온난화 지역특성을 활용 부녀 및 고령 농업인에게 적용 가능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1개소(5h 내외) / 30,000천원(시비 15,000 자부담 15,0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마을 또는 작목반
- 사업내용: 종자, 퇴구비, 농작업기 등 구입비 지원

1-6.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비용 수수료 지원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으로 농가경영 부담 경감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농가 영농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친환경 품질인증 취득 후 인증비용 신청단체(농가)
- 사업비: 40,000천 원(시비 40,0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 12.(연중)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받은 농업인 또는 단체
(무농약·유기농·취급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축산물 취급자 제외)
- 사업내용: 품질인증 획득 농업인에게 품질인증 비용수수료 90%지원

1-7.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 친환경농산물 수요증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강화
- 토양·수질 등 농업환경 보전·개선과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공급 기여
- 친환경농산물 병해충 방제 생력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6개소 내외 / 120,000천원(시비 96,000 자부담 24,0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인증(희망)농가, 단체
- 사업내용
 - 제초, 병해충 방제, 품질향상 등에 소요되는 유기 농자재지원
 - 태양광을 이용한 해충 유인등 및 A/S지원
- ※ 사업신청량에 따라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1-8.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

-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에 기반을 두고 유통 등 활성화 기여
-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지적재산권 확보 등 안정적 판로개척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2개소 내외 / 21,000천원(시비 14,700 자부담 6,3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단체(농가) ※ 도전락품목 제외품목 우선
- 사업내용: 친환경 품질인증 단체(농가) 포장박스 등 제작 지원

1-9. 친환경 농산물 시범단지 조성

- 친환경농업 신규 전략품목 육성으로 새로운 소득 작물 확보
- 친환경농업 실천 전략품목 육성으로 시장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2개소 내외 / 20,000천원(시비 20,0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전략품목(부추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 사업내용: 생산·유통관련 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1-10. 경남 공익형 직불제

- 농업·농촌의 환경 및 경관 보전 등 다원적 기능 확산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경남 공익형 직불제 도입
-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생태 보전적인 영농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24개 마을·단체 내외, 친환경 인증 전략품목 농가
- 사업비: 85,600천원(도비 25,680 시비 59,920)
- 신청기간 및 장소: 마을-2020. 3. 한 / 읍·면행정복지센터
농가-2020. 3. ~ 4.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읍·면 마을·단체,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
- 사업내용: 친환경농업 실천협약 프로그램 이행시 장려금 지급
- 프로그램 : 친환경 농촌 환경보전, 경관조성 등
- 지원단가
- 마을·단체: 연간 3,000천원
- 농가: 유기 300원/m²당, 무농약·무항생제 200원/m²당

1-11.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사업

-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연구모임 활동을 촉진하고 참여하는 회원의 사기진작으로 연구모임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6개소 내외 / 37,5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7,5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 연구회 24개회
- 지원기준: 활동이 우수한 연구회 및 사업 미수혜 연구회 우선
- 사업내용: 소득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품질향상, 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

1-12.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지원

- 농가경영개선 실천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 자율·자립 역량 및 소득향상
- 강소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조직체 집중 육성 및 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1개소 / 10,000천원(국비 4,000 시비 4,000 자부담 2,000)
- 신청기한 및 장소: 2020. 5. 중 /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 강소농교육(기본, 심화, 후속)을 이수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자율모임체
- 내 용: 강소농 자율모임체를 위한 마케팅, 교육, 컨설팅, 견학 등 추진

※ 신청기간 및 사업비·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2. 기술개발 시범사업

사업담당: 미래농업과 기술개발팀 (☎831-3815~9)

2-1.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및 보급

식물조직배양에 의해 농가 요구도가 높은 품종의 생산 및 보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신청기한 및 장소: 2020. 1월 ~ 3월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량 및 사업비: 조직배양실 및 순화·증식 온실 운영/ 47,000천원(시비)
- 사업대상: 육묘시설(2중터널)을 갖춘 농업인(단체) 우선 분양
- 보급종 및 수량: 고구마 조직배양묘 12,000포기(풍원미, 진율미)
※ 하수오 조직배양묘: 2020년 재배경력농가 시범재배 후 2021년 농가분양 계획

2-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사업개요

- 사업비: 1,396,381천원(국비 683,175, 도비 57,300, 시비 655,906)
- 공급계획: 2020.1월 중순 ~ 10월 말.(농가 공급 희망 시기에 공급)
- 보조단가: 유기질비료 1,700원/포, 부숙 유기질비료(특등급 1,700원/포
1등급 1,600원/포, 2등급 1,400원/포)

2-3.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주요 과수(감,배,키위,포도 등)의 과수원 토양산도 교정으로 양분 흡수 증대에 의한 품질향상으로 고품질 과일 생산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비: 30,000천원(시비)
- 신청기한 및 장소: 2020. 1. 17.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공급량 및 사업비: 250톤(12,500포/20kg) / 37,500천원(시비30,000, 자부담7,500)
- 신청대상: 과수재배농가

3. 생활자원 시범사업

사업담당: 미래농업과 생활자원팀 (☎831-3820~3824)

3-1.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

농촌노인의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영위로 농촌사회 활력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2개소 /15,000천원(시비 15,000)
- 신청기한 및 장소: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높고 활동의욕이 높은 마을
- 사업내용
 - 노인 건강관리: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건강관리기구, 운동기구 구입지원
 - 단체활동, 전통문화전승활동: 마을의 전통기술 및 전통음식 등 노인이 쌓아온 삶의 지혜 발굴 활용지도, 전수활동 및 기자재 지원
 - 소득경제활동: 노인의 기술과 능력을 살린 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장비지원 등

3-2.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사업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으로 건강한 식문화 확산 및 농촌 생활개선 질적 향상 도모
농산물 발효문화 재현 및 표준화 지역 농특산물 발효 및 발효식품 개발로 건강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10대 / 5,000천원(도비 750, 시비 1,750, 자부담 2,500)
- 신청기한 및 장소: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생활개선 실천 의지가 강한 농가 및 연구회 우선지원
- 사업내용
 - 사용 간편한 다목적(발효, 발아, 배양, 살균, 건조 등)기구 보급
 - 음식물 쓰레기 분해 발효 재활용 기기 지원

3-3.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유해요인 분석 및 개선으로 농작업 안전성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1개소 / 50,000천원(국비 25,000 시비 25,000)
- 신청기한 및 장소: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농작업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 연구회 등 단체
 - 참여 농업인수가 20명 내외로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방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단체
- 사업내용
 - 작목별 농작업 안전점검 전문가 컨설팅 및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 농업인 안전관리 인식 개선(농작업 이력기록, 안전교육, 안전리더 육성 등)
 - 농약 및 농기계 안전 지원(농약 보호구, 농기계 안전반사판 등)
 - 작업장 및 작업 자세 개선, 안전교육 교재 제작, 홍보 지원 등

3-4.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농촌노인 활력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 1개소 / 50,000천원 (도비 32,500 시비 17,500)
- 신청기한 및 장소 :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농촌노인 보유기술, 솜씨를 보유하여 사업화로 육성가능한 마을
 - 55세 이상의 사업참여 희망자와 젊은 층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
- 사업내용
 - 마을별 특성, 농촌노인 보유기술·솜씨 활용 소일거리 사업화 장비 및 시설 지원
 - 농촌어르신 공동체 소통 활동 및 비즈니스 공간 조성
 - 농촌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여가활동 추진사업 지원

4. 농촌관광 시범사업

사업담당: 미래농업과 농촌관광팀 (☎831-3825~6, 3829)

4-1. 2020년 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정 신청

도시와 농촌간의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신청기한: 연중 / 농림부
- 신청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추진방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신규마을을 조성 후 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으로 부실최소화
- 신규조성: 마을 만들기 사업-경제분야 (체험, 소득유형)로 추진절차에 따름

4-2.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을 육성으로 농가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1개소 / 30,000천원(도비 9,000 시비 15,000 자부담 6,000)
- 신청기한: 2020. 1. 17. 한
- 신청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 또는 영농법인체
- 선정기준: 농업과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농가(법인)
- 사업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 활동을 농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교육환경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 전문가 컨설팅 또는 학교 교육과정 및 아동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4-3.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 사업

농촌체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체험관광 서비스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2개소 / 20,000천원(도비 6,000, 시비 14,000)
- 신청기한 및 장소: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 품질인증 농촌교육농장, 농촌전통테마마을
 - 체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장이거나 대외활동이 부진한 농장 제외
- 사업내용: 농촌체험학습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 체험학습 장비 보완 등
- 선정기준: 농촌교육농장으로 지정되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
 - 체험학습시설 보완, 교육장비나 물품 등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농장 선정

4-4.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농촌교육농장과 교육기관, 소비자의 협력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1개소 / 5,000천원(도비 1,500, 시비 3,500)
- 신청기한: 2020. 1. 17. 한
- 신청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농촌교육농장
- 사업내용: 교육기관 관계자, 학부모, 학생, 소비자를 농촌교육농장으로 초청하여 관내 농장에서 파티형식으로 각 농장의 체험프로그램 제공 등

4-5. 체험마을 · 교육농장 교재지원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교재 지원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마을(농가) 소득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6개소 / 37,500천원(시비 30,000, 자부담 7,500)
- 신청기한: 2020. 1. 17. 한
- 신청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휴양마을
- 사업내용: 농촌체험관광 교재(체험용 포장재, 병 등) 제작지원

4-6. 체험마을 · 교육농장 컨설팅지원 사업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과 교육체험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마을(농가) 소득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2개소 / 10,000천원(시비 10,000)
- 신청기한: 2020. 1. 17. 한
- 신청장소: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농가
- 사업내용: 농촌체험관광 교육프로그램 컨설팅

기술지원과

1. 농산물우수관리(GAP) 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

사업담당: 기술지원과 유통팀 (☎831-3862)

1-1. GAP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소요되는 농가 부담비용을 지원하여 인증농가 확대 등 GAP제도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명: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내용: 예산범위 내 지원
 - 가. 우수관리인증 수수료, 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전액지원)
 - 나. 현지심사 출장비
 -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 예산액 : 5,000천원 (보조 100%)
 - 예산액 대비 초과 신청 될 경우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자격
 - 가. 우리시에 주소를 둔 GAP 인증취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
 - 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제외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 연중(인증 신청 농가 ⇒ 시·군)
 - 나. 지원대상자 선정(시·군)
 -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발급일, 영수증 등 관련서류 확인
 - 다.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신청 농가(단체 등), 시설에 대하여 GAP 인증(신규 갱신) 취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등 확인 후 농가별 지원
 - 라. 지원시기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1-2. GAP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명: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 사업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또는 GAP 인증을 받기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내용: 예산범위 내 지원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 공무원, GAP인증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예산액: 56,000천원 (보조 100%)
 - 가.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나.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 지원자격
 - 가. 우리시에 주소를 둔 GAP 인증취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
 - 나. 과거 농림축산식품부 주산지 안전성 분석과 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사업추진
 - 가. 사업신청: 연중(인증 신청 농가 ⇒ 시·군)
 - 나. 지원대상자 선정(시·군)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다. 지원방법
 - GAP 인증서(사본), 검사 증명서, 검사 영수증, 입금통장 사본 등 확인 후 농가별 지원
 - 라. 지원시기: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2. 사천시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사업담당: 기술지원과 유통팀 (☎831-3860)

2-1.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지원사업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우리시 농산물의 차별화와 우수성 홍보

▣ 사업개요

- 대 상: **별그리고** 포장상자를 제작 활용한 생산자 단체 또는 개인
- 내 용: 딸기, 토마토, 키위 등 9종 45개 품목 포장상자 제작지원
- 신청기간: 2020. 1. ~ 12. (연중)
- 지원조건: 사업신청에 따라 예산범위 20%이내 지원

3. 농산물 수출 지원

사업담당 : 기술지원과 경영수출팀 (☎831-3869)

3-1.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로 내수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 농업인의 사기 진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수출농가 및 업체
- 사업량 및 사업비: 농산물 수출실적 / 150,000천원(보조 150,0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2. ~ 1. 17.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경영수출팀
- 사업내용: 수출농가 및 업체 수출 물류비 일부 지원

3-2.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

다른 수출품목에 비해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물류비, 수출 포장재 제작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수출농가 및 업체
- 사업량 및 사업비: 농산물 수출실적 / 500,000천원(보조 500,0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2. ~ 1. 17.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경영수출팀
- 사업내용: 수출농가 및 업체 수출 물류비, 수출 포장재 제작비의 일부 지원

3-3.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을 통한 수출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수출농업인의 사기 진작으로 지속적인 수출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농산물 수출농가 및 수출탑 수상농가 우선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6호 / 35,200천원(보조 17,600 자부담 17,600)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2. ~ 1. 17.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경영수출팀
- 사업내용: 시설 보완 및 현대화사업, 공동 선별시설 등 지원

4.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책추진

사업담당: 기술지원과 식량작물팀(☎831-3870~4)

4-1. 2020년 보급종 종자 신청 공급

작물별		포장단위	신청	공급	1,000m ² 당 종자소요량	비고
벼		20kg	11 ~ 12월	1 ~ 3월	5kg	
맥류	겉보리 청보리 쌀보리 밀	20kg	7 ~ 8월	9 ~ 10월	13~20kg	
콩		5kg	2 ~ 3월	4 ~ 5월	5kg	
봄감자	추기	20kg	8월	10월	150kg	
	춘기		11 ~ 12월	2 ~ 4월		
옥수수	간식용	1kg	11 ~ 12월	1월	2kg	

※ 종자소요량은 파종시기 및 재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2. 식량작물 안정생산 시책추진

식량작물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지보전 생산기능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농업인 및 농협, 법인 등
- 사업량 및 사업비: 25개 사업 / 10,234,037천원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추진계획

- 분야별 내역

순번	분야별	사업량	사업비 내역 (천원)				비고	
			합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자부담
합계	4분야	24개 사업	10,234,037	5,899,520	569,465	2,901,102	863,950	
1	벼농사	9개 사업	1,273,800		37,740	885,310	350,750	
2	농가소득 보전	6개 사업	6,821,737	5,614,720	360,625	846,392	-	
3	맥류· 전작	6개 사업	858,400	265,000	97,600	322,600	173,200	
4	병해충 방제	3개 사업	1,280,100	19,800	73,500	846,800	340,000	

【벼농사 분야】

순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내역(천원)					비고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합계	9개 사업		1,273,800	0	37,740	885,310	350,750	
1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조성	16개소	120,000	-	24,000	60,000	36,000	
2	벼 신품종 증식 단지 시범	1개소	30,000	-	9,000	21,000	-	
3	재해대비 예비묘 판 조성	3,000 상자	9,000	-	-	9,000	-	
4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	3,300ha 내외	450,000	-	-	450,000	-	
5	벼 육묘인공 상토 매트 공급 지원	2,000ha 내외	500,000	-	-	250,000	250,000	
6	마을단위 소규모 육묘장 지원	2개소	60,000	-	-	40,000	20,000	
7	생산비 절감 재배 기술 지원	일괄파종기 8대	24,000	-	-	12,000	12,000	
		이송탑재판 10대	20,000			10,000	10,000	
		범씨소독기 6대	24,000			12,000	12,000	
		무논잡파기 1대	20,000			10,000	10,000	
8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사업	150부	10,800	-	3,240	7,560	-	
9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5ha내외	6,000		1,500	3,750	750	

※ 농촌진흥청사업·경남도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비·사업량 변경될 수 있음.

【농가소득보전 분야】

순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내역(천원)					비고
			합 계	국 비	도 비	시 비	자부담	
합계	6개 사업		6,821,737	5,614,720	360,625	846,392	-	
1	쌀소득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4,000ha 내외	4,000,000	4,000,000	-	-	-	
2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3,200ha 내외	1,077,337	-	323,201	754,136	-	
3	밭농업직불금	2,100ha 내외	1,100,000	1,100,000	-	-	-	
4	조건불리직불금	30ha 내외	28,000	22,400	-	5,600	-	
5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금	1ha 내외	1,000	-	500	500	-	
6	논타작물 재배지원	181ha 내외	615,400	492,320	36,924	86,156	-	

※ 농림축산식품부사업·경남도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비·사업량 변경될 수 있음

【맥류·전작 분야】

순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내역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계	6개 사업		858,400	265,000	97,600	322,600	173,200	
1	논 타작물 단지화 사업	1개소	530,000	265,000	63,600	148,400	53,000	
2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1개소	30,000	-	6,000	15,000	9,000	
3	우리밀 생산지원	250ha	90,000	-	18,000	45,000	27,000	
4	쌀 생산조정 기 반조성	25ha	50,000	-	10,000	25,000	15,000	
5	논콩재배시범	3ha이상	21,000	-	-	14,700	6,300	밭작물 생력재 배시범
	흰찰쌀보리생력재 배시범	30ha이상	12,000			8,400	3,600	
	맥류생력재배시범	10ha이상	17,000			11,900	5,100	
6	논 타작물재배 단지화 지원	4개소	108,400	-	-	54,200	54,200	

※ 농촌진흥청사업·경남도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비·사업량 변경될 수 있음.

【병해충 방제】

순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내역(천원)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계	3개 사업		1,280,100	19,800	73,500	846,800	340,000	
1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3,250ha 내외	1,195,100	19,800	57,000	808,300	310,000	2회 방제
2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550세트 내외	25,000	-	7,500	17,500	-	
3	농자재 살포기 (드론) 구입 지원	2개소	60,000	-	9,000	21,000	30,000	

※ 농촌진흥청사업·경남도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비·사업량 변경될 수 있음.

4-3. 직접지불제 등록신청

직접지불제를 통해 농가소득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농업인 및 법인 등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

순번	사업명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0년 지급단가(ha당)
합계	6개 사업			
1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2 ~ 4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 흥: 1,076,416원 비진흥: 807,312원
2	밭농업 직접지불제	2 ~ 4월		밭고정 진 흥: 702,938원 밭고정 비진흥: 527,204원 논재배 식량·사료: 500,000원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 ~ 4월		논밭·원: 650,000원 초 지: 400,000원
4	벼 재배농가 경 영안정자금	7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벼 332,937원 논타작물 750,000원
5	토종농산물 소 득보전 직불금	1 ~ 2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일년생: 200원/m ² (최대지원범위 100만원)
6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1 ~ 6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	평균 340만원/ha당

※ 농림축산식품부사업·경남도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비·사업량 변경될 수 있음.

- 직불금은 매년 농업인 직접 신청해야 함
- 자녀의 세금감면, 수당 수령 등을 위한 주소 이전 금지(각종 수혜 불가)

5. 원예특작분야 사업

사업담당: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 (☎831-3875~9)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2. ~ 12.
- 지원대상: 농업인 및 영농법인, 작목반
- 사업량 및 사업비: 26개 사업 / 2,373,497천원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7. 한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추진계획

- 분야별 내역

【채소】

순번	사업명	사업량	지원금액(천원)			지원내역
			계	보조	자부담	
계	17개 사업		1,474,497	770,164	704,333	
1	시설원예현대화 (일반원예)	10개소	99,745	49,876	49,869	양액기, 고설재배시설 등
2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3개소	12,127	7,276	4,851	복합단순 환경제어시스템
3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	0.45ha	100,000	50,000	50,000	고추비가림하우스 설치
4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5개소	125,125	62,562	62,563	알루미늄스크린 다겹보온커튼 등
5	딸기시설하우스 시설현 대화 지원	10개소	185,000	92,500	92,500	딸기의 양액기, 자동개폐 기, 무인방제기 등
6	전기난방기설치지원	3개소 내외	48,000	19,200	28,800	전기난방기 설치 및 전 기승압
7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	13개소 내외	260,000	130,000	130,000	연질강화필름, 배지함수율측 정장치, 배지로터리기 등
8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57품목	75,000	60,000	15,000	농작물재해보험료
9	재배시설전문가 현장 컨설팅 사업	5개소	4,500	4,500	-	재배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10	노후 ICT 기기점검 교 체사업	3개소	9,000	9,000	-	부품 수리, 센서교체 등
11	빅데이터 수집연계사업	3개소	1,500	1,500	-	빅데이터 송신 장비 설치
12	고추건조기 지원	50개소 내 외	75,000	30,000	45,000	고추건조기 지원

순번	사업명	사업량	지원금액(천원)			지원내역
			계	보조	자부담	
13	명품딸기 건전육묘 생산지원	28,000포	140,000	70,000	70,000	딸기 상토 지원
14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	10개소	100,000	100,000	-	관수 자동제어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등
15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보급	1개소	20,000	14,000	6,000	환경측정 센서, 측창자동 개폐기, 환기팬 등
16	딸기 우량모주 지원	32,500주	19,500	9,750	9,750	딸기 조직배양 무병 우량 모주
17	시설원예 장기필름 및 배지지원	5ha	200,000	60,000	140,000	연질강화필름, 수정재배 배지 등 지원

【과수·특작】

순번	사업명	사업량	지원금액(천원)			지원내역
			계	보조	자부담	
계	9개 사업		899,000	476,800	422,200	
1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5개소내외	120,000	60,000	60,000	재배시설 증축 및 개보수, 농기자재, 냉난방시설 등
2	읍면동 원예분야 현장 애로 지원	5개소내외	115,000	80,000	35,000	종묘비, 농기자재, 재배시설 등 지원
3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10ha	270,000	135,000	135,000 (용자포함)	농로정비, 관수시설, 관정 외 8개 세부사업지원
4	과수 수정용 꽃가루지원	14ha	15,000	7,500	7,500	키위, 배 꽃가루 지원
5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1ha	30,000	15,000	15,000	망고, 용과, 백향과, 레몬 등 우선 선정지원 재배시설 등
6	과원관리생력기계화지원	2개소	45,000	22,500	22,500	SS방제기 등
7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시범	2개소	16,000	11,200	4,800	친환경과수작목반, 연구회 자동 황토유황제조기 자가 제조용 자재구입
8	과수 자동적화기 보급 시범사업	8개소	8,000	5,600	2,400	과수 자동적화기 보급
9	과수 품질향상 기반조성	50ha	280,000	140,000	140,000	과수선별기, 전동전정가위, 덕시설, 관수시설 등

※ 사업 신청량 및 여건에 따라 사업비, 사업량 조정될 수 있음

6.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보급 지원사업

사업담당: 기술지원과 농기계팀(☎831-3880)

농촌인력 부족 해소와 농업기계 구입 경감 및 내구년한 등 이용을 제고를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9.
- 지원대상: 우리시 거주한 농업인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 지원자 우선 순위에서 제외
- 사업비: 363,000천원
- 신청기간 및 장소: 2020. 1. 1. ~ 1. 17./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본인직접) 신청

■ 맞춤형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내역

【 정액보조 구간 】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50만원,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4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4백만원 이상 6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6백만원 이상 8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3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8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4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백만원, 나머지 자부담

- 도사업(5종) : 관리기,경운기,트랙터,동력운반차, 동력살분무기(등짐):농약용
- 자체사업(2종) : 콩탈곡기, 콩선별기
- 기종별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전액 자부담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사업명	공급량 (대)	농업기계 기준금액	사업비 내역(천원)				전액보조 (대당)
			합계 (100%)	국비 (40%)	도비 (12%)	시비 (48%)	
등화장치 (경광등)	80	100천원	8,000	3,200	960	3,840	100천원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 안전사고 예방용 : 경운기 경광등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가격집에 등록된 제조업체 와 계약 체결 후 일괄공급.

기타 홍보 사항

닭·오리농장 AI 차단방역 수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실시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농장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통제



2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출입 전·후 소독 실시



3 농장 출입 전후
 소독(특히 손, 신발)
 및 환복



4 축사 내·외부 소독



5 사료빈 주변 사료
 즉시 제거,
 주기적으로 소독 실시



6 쥐·야생조류 등
 침입 방지용 헵스,
 그물망 설치



7 축사 출입 전 환복,
 신발 교체를 위한 잔실 설치,
 축사 출입구 발판소독조 설치



8 장비 등 철저히 소독



AI 의심가족
 발견시 신고처

사천시 농축산과 가축위생팀

☎ 055-831-378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천 사항

- 농장출입 차량 통제 및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실시
 - 농장 출입자 및 차량 출입기록 작성하고 소독실시 기록부 보관
- 축사 입구에는 발판소독조 설치 및 소독액은 2~3일에 한번 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 시 즉시 교체
 - 축사간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별 전용 장화(색깔 구분) 사용
- 쥐, 야생조류 등 축사 내 출입 차단 및 정기적 구서 작업 실시
- 야생조류 접근 방지 위해 사료빈 주변 사료 즉시 제거 및 소독 실시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시·군에 신고 및 차단방역 교육 실시



농장입구 출입차단



출입차량·사람 소독



축사별 발판소독조와 전용 장화



사료빈주변 주기적 청소 및 소독



축사 내·외부, 장비 소독



축사 전실 설치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임상 증상

- 닭 : 폐사율 증가, 사료섭취감소, 비늘 청색증, 안면부 부종, 침울·골음
- 오리 : 침울·골음, 산란율 저하, 폐사

국내 전파경로

- 감염된 야생조류와의 직접 접촉
- 감염된 야생조류 분변에 오염된 사람, 차량, 사료, 사양관리 기구 등
* 분변 1g에 닭 십만~백만 마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존재

소독 요령

- 겨울철에는 소독수가 얼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
- 회석하는 물의 온도를 높여주고 부동액은 소독약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혼합 금지
- 제품별 정확한 회석배율 준수, 알카리제와 산성제 혼합사용 금지

예찰요령

- 사료섭취량이 감소하였습니까?
- 폐사하는 닭(오리)가 있습니까?
- 죽은 닭이 사료통에 머리를 빼고 죽었나요?
- 산란율이 감소하였습니까?
- 설사증상이 보입니까?
- 입을 벌리고 숨을 쉬나요?(개구호흡)
- 몸을 움츠리거나 활력이 떨어진 닭(오리)가 있습니까?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사천시 농축산과 가축위생팀 ☎055-831-3781

축산농가 세척 및 소독요령



- ☞ 소독제는 질병 발생이 억제되도록 예방차원에서 집중 사용해야 합니다.
- ☞ 확실한 소독효과를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전 소독대상 표면에 있는 먼지, 오물, 분변, 흙 등을 세척·청소해야 하며,
- ☞ 병원체 사멸을 위해 적정농도 및 충분한 작용시간 유지가 필요합니다.

축산농가 소독요령

❖ 소독 전 청소

- 소독전 분뇨·사료 등은 소독약의 효력을 저하시키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 고압세척기 등으로 축사의 지붕 → 벽 → 바닥 순으로 오물을 물로 세척·청소하고 건조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축사내부에 가축이 있는 경우, 소독제가 가축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독대상 표면이 흠뻑 젖는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소독제를 뿌려야 한다.

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

❖ 축사바닥 및 토양

- ① 축사의 지붕 → 벽 → 바닥 순으로 소독하며, 흙으로 된 축사바닥은 생석회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이때 생석회는 피부나 눈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 ② 계류장 등의 표피층 흙은 긁어내고 충분히 젖을 정도로 소독한다.

❖ 분변 등 오물

- 분변 등 오물을 수거·처리하고 분뇨운반차량과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한다.



❖ 정문소독조 및 축사입구 소독조

- ① 정문소독조는 차바퀴가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소독시설에 열선 등을 설치하여 동결방지 장치를 한다.
※ 동결보완장치 마련 불가능 시 생석회를 도포한다.
(생석회가 물과 반응하여 소석회가 되어도 일정기간 소독효과를 나타낸다.)
- ② 축사 입구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하며, 축사내부에서 소독하되 미지근한 물로 소독약을 고농도(유기물조건, 소독제의 사용방법 참고)로 희석하여 사용하고, 각 축사마다 다른 장화를 비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출입 사람·가축·차량 소독

① 농장 출입구에서의 소독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가축·차량(가축분뇨, 동물악몽, 시료 등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 **출입 전·후 소독** 실시
- 외부인의 농장 출입시 방역복·장화·장갑을 착용토록 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각 소독 실시
-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농장 종사자들은 외부 방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소독 실시 후 농장 진입



② 축사 출입구에서의 소독

-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로 갈아 신은 후 소독 실시
- 축사 입구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하며, 소독액은 2~3일(필요시 매일)에 한번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시 즉시 교체



③ 농장 내·외부 등 소독

- 축사 내·외부, 장비, 농장 출입구 등에 대해 주1회 이상 소독 및 소독실시기록부에 기록 보관
- 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한 경우 차량의 동선 및 통행로 등을 세척 소독

소독기구

- 동파방지를 위해 소독 후 호스·파이프·노즐 부위의 **소독수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온덮개**를 하거나 실내에 보관

소독제(구제역) 성분별 특징 및 주의사항 등

분류	성분명	주요작용대상	주요조성	주요허가 화석배수*	소독제의 특징 및 주의사항
산성제제	구연산(단일)	시체, 분뇨, 배설물, 주액, 축산차량, 기계류, 의복	구연산 50%	500배	• 상온에서의 구제역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우수하니 겨울철 낮은 온도 및 유기물 조건하에서 소독력 저하
	구연산(복합)	축산차량, 기계류, 의복	구연산 20% + 4급 염모늄 10%	500배	• 구연산 단일제와 같이 상온에서는 효과가 우수하니 겨울철 저온에서의 소독력 저하 • 4급 염모늄제제와 같이 사용시 침투력이 증진되어 소독력 상승
	과산화소산	분뇨, 소독조	과산화소산 5.8%	600배	• 타 소독제에 비해 살균 작용시간이 짧아 유기물 조건이나 지온에서 비교적 효과 좋음 • 취급시 피부 자극성이 있어 적절한 보호장구가 필요하여 희석 이후 소독역의 통찰 주기변질(필요시 재조 및 즉시 사용)
산화제	차아염소산	축사, 주액, 의복	99%	50배	• 유기물에 의해 효과가 감소되므로 반드시 사용전에 세척·청소 • 눈과 피부에 독성이 있음
	이소시아나이드륨	축사, 주액, 의복	100%	1000배	• 분변, 우유 등이 있는 곳에 사용금지 • 반드시 사용전에 청소 • 타성분에 비해 겨울철 소독력 유지
	삼중염	축사 내외부, 축산차량, 축산 기구	삼중염 50% + 이소시아나이드륨 5% 또는 사과산 10% 등	1000배 또는 1,300배	• 독성이 적으며 안정적임 • 겨울철 타 성분에 비해 소독력이 있으며 부동액과의 혼합 사용에도 소독력 유지
알데하이드	글루타르알데하이드(단일)	축사내외부, 축산차량, 소독조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0%	50배	• 자극성 가스 배출로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며 적당한 환기조건하에서 사용
	글루타르알데하이드(복합)	축사내외부, 축산차량, 소독조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5% + 4급 염모늄 10%	100배	

- * 2016년 3월까지 허가된 구제역 소독제 주요 제품의 성분과 화석배수에 근거함
- ** 재태형 소독제의 종류는 감염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소독제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소독제의 표시사항 참조

의심축 발생즉시 |

사천시 농축산과 가축위생팀

☎055-831-3781

차단방역

야생철새 관련 농가방역실시요령

-  철새 출몰지역 출입금지
▶ 철새도래지, 저수지, 하천, 습지, 인근 논밭 등
-  철새 등 야생조류 접근 차단
▶ 축사-사료보관시설 그물망 설치, 문단속 철저
-  쥐 등 야생동물 유입방지
▶ 농장울타리 밖, 축사외부 등 생석회 살포
-  외부인 농장출입 통제
▶ 사람·차량 출입시 소독 실시, 출입자기록부 기록
-  야생조수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저장통 주변 떨어진 사료 즉시 제거 및 주기적 소독
-  매일 아침 철새의 축사유입여부 확인 및 분변제거, 소독 실시
-  모든 축사입구마다 소독조 설치
▶ 축사 출입시 전용신발(장화) 사용
-  철새 시 위험알림 및 주변 야생철새 관찰시 다시 한번 소독 등 방역사항 점검 및 조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철저

1.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기

대상축종	예 방 접 종 시 기	접종량 (1회)
소	① 송아지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접종 ② 모든 소(송아지 제외)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돼지	① 모돈 - 분만 3~4주 전 접종 ② 웅돈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③ 자돈 - 1차(2개월), 2차(3개월) 총 2회 접종 ④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후보 모돈 예정)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2ml/두
흑돼지·멧돼지	① 생후 8~12주 1차, 1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염소	① 어린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2차접종 4~7개월 후 보강 ② 1세이상 - 1년 간격으로 접종	1ml/두
사슴	① 어린 사슴 :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 ② 모든 사슴 :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2ml/두

※ 위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기를 참고하되 예방 접종시기, 접종 횟수 등 예방접종 세부 방법은 해당 백신 설명서에 표기된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라야 하며, 축종별 항체 양성률 이상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함

2. 주의사항

- 16두 이상 검사하여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재검사 없이 과태료(200만원 ~ 1,000만원 이하) 부과

3. 구제역 백신 취급 및 접종 요령

가. 구제역 백신은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장상태(2~8℃)로 보관. 백신이 냉매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백신을 운반할 때에는 냉장상태(2~8℃)가 유지·운송

나. 예방접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상온(15~25℃)에 놓아 두었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시간 내(2~3시간내)에 사용 (※ 항온수조는 가급적 사용하지)

- 다. 백신접종 전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병을 부드럽게 천천히 위, 아래로 흔들어 고르게 섞어 줌.(20회 정도 충분히 섞어 줌)
- 라. 한번 개봉한 백신은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24시간이내에 사용
- 마. 축종에 맞는 주사바늘 사용 권장. 소 송아지(70kg 이하) 18G 사용/ 소(70kg 이상) 18~17G 사용
- 바. 소, 사슴, 염소는 어깨부위의 근육에 접종
- 사. 접종할 때 주사바늘이 비스듬할 경우에는 지방층에 백신이 주입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직이 되도록 하여 접종
- 아. 오일 백신이므로 접종할 때 접종용량이 근육내로 완전히 주입될 수 있도록 천천히 주입
- 자. 동일한 주사바늘로 여러 마리를 접종할 경우, 주사바늘이 오염될 수 있으니 1침 1두(돼지는 1침 5두 이내) 원칙을 준수. 뭉뚝해진 주사바늘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종부위에 염증(화농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차. 백신 보관방법이 부적절 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한 경우, 주사바늘의 길이가 짧거나 올바르게 접종되지 않아 백신이 지방층 등에 주입된 경우, 백신 접종 시기가 부적절하거나 접종용량이 부족한 경우, 백신면역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니 유의 당부
- 카. 도축출하 시기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는 백신 흡수가 충분치 않아 항체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조직 내 잔류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백신접종 철저

축산관계자의 고병원성 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및 해외여행시 준수사항

1. 출국신고

- 출국 신고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 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거나 공항만 검역본부에 전화(ARS 1670-2870), 방문 또는 출국장 내 출국 신고함을 이용

2. 입국신고

- 입국신고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에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

3. 위반 시

-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0만 원 이하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세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확인 가능

4. 주의사항

- 해외여행을 하는 일반 시민과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국에서 동물,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 금지(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염경로는 대부분 해외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8.26일 중국 발생지(요녕성선양시) 여행객휴대품(만두, 순대)에서 바이러스 검출)
- 해외여행 후에는 옷 등은 바로 세탁, 샤워 등 개인 위생관리,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에 출입금지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 신청

1. 브루셀라병 검사 대상: 거래되는 소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 거세한 수소는 브루셀라 검사 제외

2. 소 결핵병 검사 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의 소 또는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12개월령 이상의 소
(가축방역관이 방역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송아지도 검사; 2년 이내 소 결핵병 발생 농가)
- 12개월령 이상 거세우가 거래 혹은 가축시장에 출하될 경우 결핵검사 필요
(2년 이내 소 결핵병 발생 농가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송아지도 검사)
※ 도축장 출하 시 검사 제외(도축장에서 생체 검사로 대체)

3. 검사신청 방법

- 거래 또는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출하 최소 21일(3주)전까지 가축위생팀 (☎831-3782)으로 전화 신청
- 개인 간의 거래 및 본인의 다른 곳에 있는 농장간의 이동 시에도 브루셀라 및 결핵 검사 반드시 실시
※ 출하 3주전까지 여유를 두고 브루셀라, 결핵 검사 신청

4. 브루셀라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2개월(도축장 출하 시에는 3개월)

5.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2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부과

반려동물 등록

1. 반려동물 등록대상

-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2020년 3월1일부터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변경됨

2. 등록장소

- 등록대행업체 동물병원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팀 (055-831-3784)

3. 변경신고

- 동물 잃어버렸을때: 10일이내
-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동물 사망 시, 무선식별 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분실과 못쓰게 되었을 때, 30일 이내 인터넷(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변경신고
- 소유자 변경 신고: 농업기술센터에 동물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

4. 위반시 과태료

- 동물 미등록: 1차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맹견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1차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목줄등 안전조치 미이행: 1차위반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 인식표 미부착시: 1차위반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

5. 동물학대와 유기는 범법행위

- 동물학대범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에 상해 입히는 행위, 유실·유기동물판매 살해 등
- 동물학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물유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쌀 수급안정을 위한 3저·3고 운동

1. 3저·3고 운동

가. 【3저】

- 1) (재배면적) 논에 타작물을 심어 벼 재배면적(261ha) 줄이기
 - * 쌀 생산조정제 사천시 목표(261ha) 달성을 위한 전담 기술지원
- 2) (질소비료) 질소비료 사용량을 10a당 2kg 줄이기
 - * (현행) 9kg/10a → 최고품질 7kg/10a(쌀 20만톤 감소, 품질향상)
- 3) (생산비) 직파 등 생력기술 실천으로 쌀 생산비(10%) 줄이기
 - * 직파재배 확대 추진

나. 【3고】

- 1) (품종확대) 다수성보다는 밥맛 좋은 품종을 확대 재배하기
 - * 밥맛 좋은 품종(6품종) 확대, 다수확 품종(6품종) 감축
 - * 확대(삼광, 하이아미, 영호진미, 해품, 수광, 호평), 감축(새누리, 은광, 새알미, 대보, 황금누리, 호품)
- 2) (완전미 비율) 완전미 비율 90%이상 된 쌀만 판매·유통하기
 - * 완전미 비율 향상으로 고품질 국산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3) (소비확대) 쌀 가공식품 개발·보급으로 쌀 소비를 확대하기
 - * 「쌀소비확대협의회」 구성 : 20명(행정, 농협, 생산단체, 가공업체 등)

2. 무논점파와 이양재배의 노동력 절감효과('09)

구 분	육묘이양 주요 작업단계별 노동시간 (시간/ha)							계
	경운 정지	시 비	종자 준비	못자리	직파/이양	보식	제초	
무논점파(A)	10.7	2.9	3.4	-	2.5	8.3	13.0	40.8
이양재배(B)	10.2	2.1	2.7	22.4	16.8	1.2	7.7	63.1
대 비(A-B)	0.5	0.8	0.5	△22.4	△15.5	7.1	5.3	△22.3 (△35.3%)

※ 자료출처 : 국립식량과학원, 2009 영농활용자료

【붙임 1】

2020년 사천시 보급종 작물별 품종특성

○ 보급종

품종명	출수기 (월. 일)	벼키 (cm)	이삭수 (개/수)	벼알수 (개/수)	쌀수량 (kg/10a)
새일미 (중만생)	8.13.	77	13	128	585
영호진미 (중만생)	8.21.	70	14	102	544
해담쌀 (조생종)	7.18.	67	18	84	548
현품 (중만생종)	8.18.	74	13	101	559
해품 (중생종)	8.11	73	14	98	526
추청 (중만생)	8.19.	84	22	97	453
동진찰 (중만생)	8.13.	80	15	100	549
운광벼 (조생종)	7.31.	60	14	93	586
하이하미 (중생종)	8.15.	83	13	119	538

종자 전염병(키다리병, 도열병 등)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 보급종도 반드시 침지소독을 해야합니다

정부 보급종 소독 종자는 살균제(이프코나졸 액상수화제, 상품명: 키맨)를
볍씨 표면에 묻혀 놓은 상태이므로 침지소독을 하여야 방제효과가 있습니다.

※ 온탕소독과 침지소독을 병행하시면 소독효과가 더 높습니다.

※ 소독 안 된 종자는 살균제를 추가하여 침지소독해야 합니다.

1차 - 온탕소독

온탕소독기를 이용하여 볍씨 20kg을 물 200L(온도 60℃)에 10분간 담근 후, 바로 10분 간 냉수처리

2차 - 침지소독

발아기를 이용하여 물 온도 30℃에서 48시간 동안 물을 바꾸지 않고 침지소독

- 볍씨 20kg + 물 2말(40L) 기준으로 침지
- 종자는 포대 깨 넣지 않고 망사포대에 옮긴 후 담가야 약제가 잘 스며들
- 종자의 70~80%이상이 1~2mm 정도 싹이 튼 것을 확인한 후 상자에 파종
- 발아기를 이용하지 않을 시 온도가 낮아 종자내부까지 소독약이 침투 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짐
- 필요시 살충제 추가

적정량 파종 및 육묘기간 중 통풍 실시

구 분	어린묘	치묘	중묘
상자당 파종량(g)	200~220	180	130
종자 20kg당 상자 수	91~100	111	154

- 특히 상자 쌓기 시 고온 주의
- 권장 육묘 온 · 습도: 주간 25℃, 야간 12℃, 습도 70% 이하

BM활성수 운영안내

1. BM활성수(Bacteria Mineral Water)란?

칼슘과 마그네슘, 철, 게르마늄 등 각종미네랄을 추출하고, 이를 생명체가 흡수하기 쉬운 상태인 킬레이트미네랄로 화학적인 결합한 물

2. 운영안내

가. 공급대상: 관내 농업인 / 공급량 : 10톤/주

나. 공 급 일: 주 1회(매주 화요일, 09:00~18:00)

다. 공급방법: 직접 방문수령(무상공급), 개별 용기지참(필수)

라. 공급장소: 농업기술센터(BM활성수 생산시설)

3. 활용방법

가. 작물에 사용: 농산물 품질향상, 생산성 향상, 저장기간 연장

1) 발아촉진: 종자를 10~20배액에 24시간 침종 후 파종

2) 작물성장: 2주일 간격으로 50배 희석액을 1,000m²(300평)당 1톤 관주

3) 병충해 발생시: 50배로 희석하여 엽면시비

4) 퇴비제조: 퇴비 1톤 당 20ℓ 혼합

나. 축산에 사용: 악취와 파리 감소, 가축건강 증진, 양질 퇴비생산

1) 축사살포: 1일 2회(오전, 오후) 수분간 살포(원액~ 50배액)

2) 가축급여: 가축에게 먹일 식수에 500배액 희석하여 급여

3) 발효사료: 사일리지용 생초 1톤당 원액 20ℓ 첨가

4) 액비발효: 돈뇨 1톤 당 20ℓ 고루 섞어줌

토양검정 안내

1. 토양검정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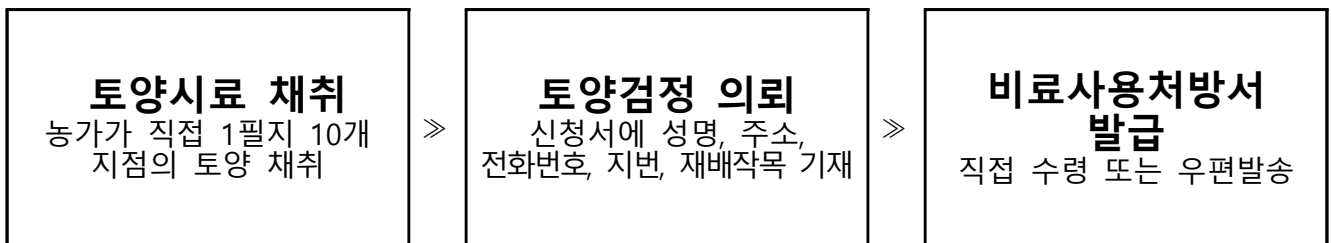
토양의 유효성분¹⁾ 함량 분석을 통한 적절한 시비처방 및 양분의 과다·결핍 사전 예방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건강한 토양 유지에 기여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시 필수항목)

2. 토양검정 안내

- 가. 검정기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055-831-3716)
나. 토양검정항목: 토양의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칼슘,마그네슘,칼륨), 염류농도(EC) 등

3. 신청방법

- 가. 신청대상: 사천시 농경지 경작자 또는 농지소유자
나. 신청절차



4. 토양시료 채취 및 검정의뢰 방법

- 가. 토양시료 채취
1) 2)채토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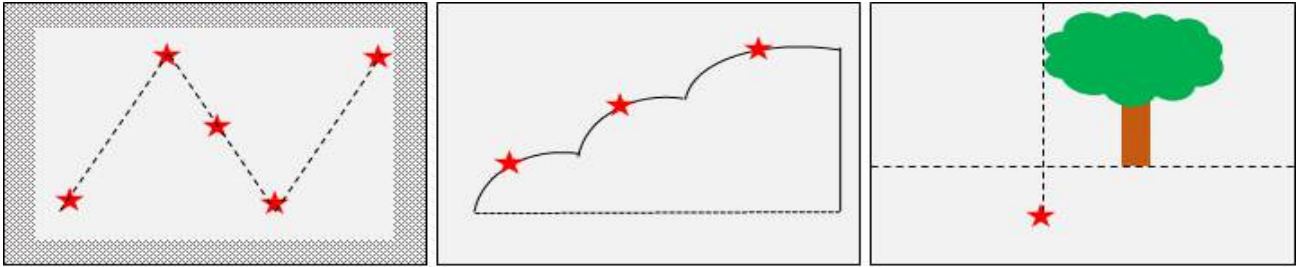
벼	밭작물, 하우스	과수
재배 전이나 수확 후	수확기나 수확 직후	비료 사용 전

2) 채토방법

- 토양표면을 1~2cm 정도 긁어내고, 식물의 뿌리가 분포(작토층)하는 지점에서 채토 (논은 18cm, 밭은 15cm, 과수원은 30~40cm 깊이).
- 한 필지에 10개 지점의 토양을 고루 섞은 후 500g을 깨끗한 봉투에 담음

1) 유효성분 : 식물체에 흡수되어 영양원으로 공급되는 물질

2) 채토 : 흙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



★채토지점, ■제외지점

경사지(상,중,하지점)

과수원(나무끝지점)

나. 토양검정 의뢰

- 채토한 토양을 담은 봉투 겉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번, 재배 작목]을 기재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 검정실 방문하여 의뢰

5.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가. 시비처방서 내용: 토양특성, 토양성분함량(산도 외 6성분), 질소, 인산, 칼리, 토양개량제(석회, 퇴비) 살포량, 복합비료 살포량 등

나. 시비처방서 발급

1) 발급기한: 토양검정 의뢰 후 15일 내

2) 수령방법: 직접 수령 또는 우편

- 홈페이지(<http://soil.rda.go.kr>)에서 수시 출력가능

사천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안내

1. 목 적

- 농산물 공동가공시설 운영을 통한 중·소 농가의 가공창업 지원
-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 증대

2.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현황

가. 시설위치: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농업기술센터 내

나. 규 모: 330m², 기계설비 50종 51대

다. 주요시설: 습식가공실, 건식가공실, 분쇄실, 고추가공실 등

라. 가공품목: 음료, 잼류, 농축액류, 소스류, 분말류, 절임류 등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2018. 3. 19.(잼류, 음료류, 농산가공식품류, 기타식품류)

3. 이용 안내

가. 이용자격: 사천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농산물 자가생산)으로써 농산물가공교육을 이수한 자

1) 접수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

2) 2020년도 농산물가공교육 신청(2월경/시보, 현수막, 홈페이지, 읍면동 홍보 예정), 교육 실시(3~6월경) 예정

나. 유통·판매 농업인: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필수

다. 시제품생산 농업인: 자가소비용이며 제품 판매 불가(이용 횟수 및 물량 제한)

라. 운영시간: 월 ~ 금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마. 이용료: 1회 / 4시간 기준, 시간 / 1시간 기준

바. 이용절차: 접수(전화) → 시간 및 순서조정 후 사용일 확정 → 서류작성 및 이용료 (고지서) 납입 → 시설 이용

사. 문의사항: 생활자원팀 (☎831-3820, 3806 ~ 3808)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1. 현 황: 보유기종 95종 280대
2. 운영기간: 연 중
3. 임대사업장: 농업기술센터(용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곤양)
4. 임대신청 조건: 사천시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신청
5. 농업기계 임대료: 1일 기준 기대구입 가격의 0.2%
6. 임대기간: 3일간(임대 신청이 없는 경우 1회 연장 가능)
7.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전화신청 (☎831-3880,3714/ 010-8549-3815)

농업기계 교통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1. 농업기계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많이 발생하나요?

- 이양 및 수확작업 시기에 전체 사고의 57.4%가 발생하였고 하루 중에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41.8%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기계가 가해자인 사고는 39.8%로 교차로 또는 마을 진입로에서 선회하거나 차도를 횡단하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많았으며 농업기계가 피해자인 사고는 60.8%로 직선 도로에서 상대차량의 후방추돌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침착성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반응을 어렵게 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킨다. 출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천천히 출발한다.
-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자!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 반사판 등을 반드시 부착하고 트레일러에 짐을 실을 때는 뒤에 오는 운전자가 등화장치를 볼 수 있도록 과다하게 적재하지 않는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홍보

1. 농작물재해보험이란?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2. 재해보험 가입안내

가. 대 상: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가입절차

보험가입 안내(지역농협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 확인(농지 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다. 가입장소: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

라. 가입기간: 미정

3. 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가. 대상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관내 농업인

나. 사업비: 800백만원(국비400, 도비80, 시비240, 자부담80)

※ 지원비율: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 자부담 10%

다. 신청방법: 별도신청 불필요(보험가입 시, 농협을 통한 자동연계 지원)

4.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2019. 12. 기준)

구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비고
특정위험	인삼	태풍(강풍) · 폭설 · 집중호우 · 침수 · 화재 · 우박 · 폭염 · 냉해	
적과전종합위험	사과·배·단감·뽕은감	(적과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 화재	
		(적과후) 태풍(강풍) · 우박 · 화재 · 지진 · 집중호우 · 일소피해 · 가을동상해 (특약) 나무보상	
종합위험보장	참다래·매실·자두·포도·유자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특약) 나무보상	
	복숭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 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특약) 나무보상	
	밤·대추·오디·오미자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의 농업재해(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구분)란 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우박·서리·조수(潮水)·대설·한파·병해충*·폭염·일조량 부족·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

* 상기 자연현상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

법 령	대 상 재 해	
자연재난 (행정안전부)	<공통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해일, 조수	풍랑, 낙뢰,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농업재해 (농식품부)		이상저온, 우박, 서리,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2. 재해 유형별 대응요령 ☞ 농업재해 발생 시 읍면동에 신고

가. 태풍 및 집중호우

1) 농업인이 할 일

- 기상예보 및 농업인 행동요령 청취(TV, 라디오, 마을앰프 등)
- 하천, 저수지 등 범람 우려지 순찰
- 논 물고, 밭고랑, 배수로 등 정비, 하천, 배수로의 가설물 제거
- 논두렁, 제방손질 및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 비닐피복
- 과수, 고추, 참깨 등은 지주 설치
-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결속 및 버팀목 설치
- 태풍 통과시 쓰러짐, 백수 피해우려 논은 논물 깊이 대기

2) 사후대책

- 피해 시설물은 즉시 철거하여 2차피해 예방
- 침관수 농작물 물빼기(최소한 벼 잎 끝 노출)
- 흙 양금 오물제거, 병해충 방제, 도복 농작물 세우기(1~2일 이내)
- 토양표면의 흙양금을 제거하고 물 걸러대기
- 비닐피복 작물은 비닐 제거 후 요소 엽면시비
- 과수의 부러진 가지를 절단 약제 살포

- 파손농두렁, 제방응급 복구
- 유실·매몰 및 소생 불가능 농작물 대파 실시

나. 폭염(축산)

1) 농업인이 할 일

○ 사양관리

- 아침·저녁 서늘한 때에 방목을 실시하되, 한낮에는 방목 사양
- 교배 및 이동은 기온이 서늘할 때 실시하며, 과도한 운동을 억제토록 함
- 소 등 대가축은 외부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경에 몸에 물을 분무
- 열사병, 일사병이 일어난 소는 즉시 그늘로 옮기고 머리에 냉수를 끼얹어 주고, 강심제, 생리적 식염수와 5% 포도당액을 주사하며, 돼지는 해열제를 주사하고 물을 분무함
- 관심을 갖고 신선한 물을 충분하게 급수할 수 있도록 함

○ 축사관리

- 차광막 시설, 단열재 부착, 그늘막 설치 등으로 실내 온도 상승 방지
- 통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강제 통풍 등 창문 개폐시설 개·보수
- 돼지, 닭 등 밀집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은 호흡기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 축사 내 위생관리 및 방역소독 철저
- 여름철 정전사태에 대비, 축사 시설 내 화재예방 대책 강구

○ 사료관리

- 고열량·고단백 사료 급여로 사료섭취량 감소 보완
- 변질되거나 부패된 사료 급여 금지
- 혹서기 중 비타민과 광물질 첨가제를 사료에 섞어 급여하고 소금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비치
- 소 등 반수추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초지 사료 등 양질의 조사료 공급대책 마련
- 온도 상승시 사료 급여량을 조절

- 특히, 온도 상승에 민감한 돼지, 닭의 축사내 정전에 따른 폐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전력시스템 등 보완

○ 도열병 등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및 방제 강화

○ 비닐하우스 등 온실재배작물 관리강화

- 병충해 발생 증가에 대비한 방제대책 추진
- 정전, 화재 등에 대비한 예방대책 추진

다. 냉해(벼)

1) 농업인이 할 일

- 냉해 우려지역 논두렁 높이기 및 20cm이상 물깊이 대기 준비
 - 경지정리지역은 포구단위로 물깊이 대기
 - 비경지정리지역은 논두렁 높이기 적극추진
- 냉해 우려지(냉조풍지, 냉수용출논, 산간고냉지 등)는 인산, 칼리 20~30% 증시

2) 사후대책

- 뿌리활착 후 철저한 물 걸러대기 : 물 흘러대기 금지
- 관정수, 양수 등 찬물 유입 논은 비닐튜브, 돌림도랑 설치
- 비닐튜브 및 돌림도랑 주위 풀베기로 일사량 증대
- 저온 내습시 물깊이 대기로 어린이삭 보호 및 등숙비율 향상
- 출수기 저온시 이삭이 늦게 패는 경우 특수비료 엽면살포로 등숙 향상
 - 벼 입고병약 및 인산·칼리 살포
- 병해충 예찰강화 및 벼 물바구미, 도열병, 벼멸구 등 방제 철저

3. 폭염시 농업인 행동요령

가. 사전 준비사항

- 1)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본인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2)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 하세요.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28℃가 적당)

나. 폭염주의보 발령시

- 1)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 2)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3) 농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 4)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
(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다. 폭염경보 발령시

- 1)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 2)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3)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2시~오후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4)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지킵시다!

농가 자체예찰

- 과수화상병 증상을 숙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에 참석
- 과수원 관리 할 때 상시적으로 예찰을 하고, 만개 후 5~7월경에는 월 2회 이상 실시

과수원 관리

-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과수원 출입용 신발, 작업복 및 작업도구는 과수원 내에서만 사용
- 농작업을 하는 사람의 과수원 출입 시 전정가위 등 농작업 도구는 수시로 소독
 - * 소독방법 : 70% 알코올에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
- 전정작업자 등 농작업 출입자 기록, 전정 및 적과시기, 약제 살포 시기 등 매년 관리작업 시기와 내용 등을 관리대장에 작성
- 과수나무의 접수, 묘목 등은 외국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지역에서 유입 금지하며 품종, 구입처, 재식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사전 약제방제

- 과수화상병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3회(개화전 1, 개화기 2), 미발생지역은 1회(개화전 1) 과수화상병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
- 개화전 사전 약제방제의 경우 배는 꽃눈 발아직전, 사과는 신초 발아전에 살포
- 개화기 1차 살포는 과원에 꽃이 80% 핀 이후 5일±1, 2차 살포는 1차 살포 후 10일±1에 살포
 - * 품종, 지역, 기상 등 제반조건에 따라 살포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여건과 등록된 농약의 살포시기에 맞게 약제 살포
- 농약 살포 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부한 사전 약제방제확인서 작성, 빈 농약봉지는 버리지 말고 반드시 1년간 보관

의심증상 발견 및 신고

- 생장기에 배나무 신초나 꽃이 검게 변하며 말라죽는 증상 및 사과나무 가지가 붉은색-갈색으로 말라죽는 증상 발견
- 병든 잎에 흑갈색의 병반이 생기고 병이 진전됨에 따라 잎은 말리고 주그러들었으나 낙엽되지 않고 가지에 매달려 있는 증상(배나무, 겨울철)
⇒ 즉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등에 신고
- 신고 후 임의로 의심 가지나 꽃을 직접 잘라서 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
- * 의심주가 있는 과원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신발가리개를 착용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가지를 채취할 때 사용한 전정가위는 반드시 소독처리

			
배 과총의 증상	배 잎의 증상	사과 잎의 증상	사과 가지의 증상

< 농가신고제 운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중 농가가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신고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농가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과수화상병 의심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식물방역법」 제50조, '17.12.3 시행)

<병 발생 신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063-238-1063)

임시조치 및 확진

- 정밀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후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의심주 또는 의심가지 매물 및 소각 등 임시조치
- 과수화상병 확진까지 과수원 내 작업 중단 및 출입금지

과수화상병 확진 시 긴급방제

- 과수화상병 확진 시 발생과원 내 사과, 배 등은 폐원(매물)조치
- 폐원된 과원은 3년간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으며(기주식물 이외 농작물은 재배가능) 허가없이 매물지의 밭갈은 금지
-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폐원된 과원은 국가에서 손실보상금 지급

< 과수화상병 주요 기주식물 >

- 유실수 : 배나무, 사과나무, 모과, 살구나무, 복숭아, 매실, 자두, 아로니아, 체리, 양앵두, 앵두나무, 라스베리
- 정원수 : 조팝나무, 장미, 꽃사과, 마가목, 풀독이, 팔배나무, 명자나무, 해당화
- 야생종(기타) : 돌배, 짙레, 산딸기, 수리딸기, 멧석딸기, 딸기, 뽕나무류, 마가목, 팔배나무, 콩배나무, 해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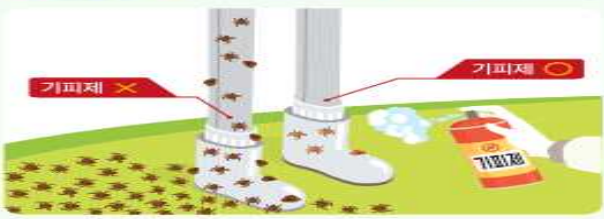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및 관리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예방 3 풀숲 피하고



발행일 2019. 3. 8.

예방 4 씻고, 빨래하고



전신 샤워 및 진드기 찾기



작업복 분리 세탁하기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5명 중 1명 사망
(2013~2017년, SFTS 기준)

의심 즉시
의료기관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미세먼지란?

정의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mu\text{m}$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흡입성 먼지 (머리카락 직경 약 $60\sim 70\mu\text{m}$)

- 먼지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_{10} , 지름이 $10\mu\text{m}$ 보다 작은 입자)와 초미세먼지($\text{PM}_{2.5}$, 지름이 $2.5\mu\text{m}$ 보다 작은 입자)로 구분



인체 위해성

■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스며들어 천식과 폐질환 및 염증 유발 가능

농작물 및 가축영향

■ 생산성 및 품질 저하 유발 가능

- (농작물) 기공차단으로 물질대사 이상, 일조량 저하 등으로 작물 생육 장애 유발 가능
- (가 축) 호흡기 및 눈 질환 유발, 장기간 노출 시 생산성 저하 유발 가능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미세먼지의 예측농도가 미세먼지법에 따른 아래 3개 발령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별로 미세먼지를 긴급히 줄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초미세먼지)

- ① 당일 0~16시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예측
- ② 당일 주의보($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또는 경보($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발령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mu\text{g}/\text{m}^3$ 초과 예측
- ③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75\mu\text{g}/\text{m}^3$ 초과 예측

- (안내) 사·도 관할 주민 대상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송출하고, 전광판 송출과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 Cell Broadcast Service(CBS) : 긴급재난 시, 지자체에서 휴대폰 문자로 국민행동요령 등 안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농업인 행동요령

1 농작업간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 미세먼지 발령 단계별(주의보·경보) 조치사항, 보건용 마스크 착용방법, 인근 보건소·병원 위치 확인 등 대응요령 숙지

* (부록 2)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참조

- TV, 인터넷, 콜센터(131), 모바일앱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미리 구비

*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실외 농작업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힘든 작업은 최소화

● 마스크는 1회용이므로 충분히 준비하고 수시로 교체

- 건조한 농경지 경운정지 등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 지양



-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힘든 작업을 할 경우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 농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필요시 인근 보건소 및 병원 내원

- 농작업 후 얼굴과 손 등 온 몸을 깨끗이 씻고,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 및 충분한 숙면



2 농작물, 농업 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 요령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 TV,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
- 미세먼지 세척을 위한 급수시설 및 세척 장비 작동 여부 등 미리 점검
- 비닐 하우스와 축사, 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 작동 여부 점검
- 야외 건조·벚짐,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 차단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비닐하우스와 축사·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축사 출입 시 철저한 개인소독 실시
- 미세먼지로 작물의 일조가 부족할 경우 인공조명 등을 활용하여 광 보충
-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 세척
- 노후 농기계의 야외 농작업 최대한 지양



효과적인 시설물 세척방법

- 비닐하우스 : 수용성세제를 0.5% 정도로 희석하여 동력분무기에 담아 살포후 맑은 물로 2차 세척
- 유리 온 실 : 옥살산(oxalic acid) 4% 용액을 유리 바깥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뿌려주고 30분 뒤에 물로 세척

3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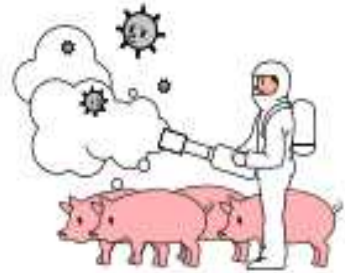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해외 연구에 따르면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로 전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축산악취 저감 노력 필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축산농가 행동요령

- (축사 내부) 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 가동(해제시까지)
 - 가축에게 미생물제제 급여,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 양돈·가금 등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흡수액 교체(보충) 및 가동 최대화
 - 한육우 등 개방형 축사의 경우 깔짚 바닥 뒤집기 중지
- (축사 외부)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퇴비사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및 비닐(천막) 덮기(해제시 까지)
 - 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일시중단하고,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 실시



공동자원화시설 및 퇴비공장 관리 요령

-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퇴비화시설의 교반기·송풍기 가동 중단
- 시설 외부에 적치된 퇴비 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 악취저감시설 흡수액 교체 및 가동 최대화, 시설 주변 및 인근 도로 물 청소 실시



공동방제단

- 소규모 축산농가, 밀집사육지역, 전통시장 등 주변에 소독제 살포

4 영농폐기물·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시 문제

-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 폐기물 관리법 상 벌칙 사항(제68조제3항) :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 (재활용 가능품목)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
- (재활용 불가능품목)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



■ 벼·보릿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처리

■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해충류는 11%가 방제되나,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가 89% 감소



산불예방 안내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6)

산불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기



-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기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농기 허가는 기간을 정하여 마을단위 공동으로 추진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이용해 주세요 !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은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산행에 앞서 관할 시·군·구청이나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50만원
-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10만원
-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산불예방 국민행동요령

1.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산림청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2~5월, 11~12월경)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 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지 맙시다.
-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역의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산불예방 참여요령

-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 또는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ライター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맙시다.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시다.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은 절대 버리지 맙시다.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하지 맙시다.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맙시다.

-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3.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10만원 이하
- 산림 안에 담배꽂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이하

4.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042-481-4119),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가 없을 경우 활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으로 대피하지 않습니다.
- 산불로 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이나,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5.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주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접·연결된 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6.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안전취약계층>

-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적극 요청(알림벨 울리기 등) 한다.
- 빠른 시간 내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출구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피난 안전구역으로 피난하여 구출을 기다린다.

<종사자 또는 도우미>

- 재난 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수시로 체크한다.
- 피난 상황 발생 시 피난방송을 실시하며, 주어진 임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임무 분장 체계를 유지한다.
- 출입구를 개방하여 출입구 근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안전취약계층을 임시 대피 공간으로 이동시켜 구조 활동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피여부를 재확인한다.

〈일반국민〉

-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119, 산림관서, 경찰서, 해당 안전취약시설에 신고한다.
- 진화차량이 취약시설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구조·구급차가 신속히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여력이 되는 건장한 국민은 취약계층의 구조활동을 돕는다.

7. 산불진화 참여 행동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괘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Q & A

Q :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A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요령

1. 화재로 소실된 축사관리

- 산불로 인해 소실된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 합시다.
-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합시다.
-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감전이나, 누전·합선에 의한 화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합시다.

2. 화재 발생으로 놀란 가축관리

- 빠른 시간 내에 축사 내외를 정리 정돈해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고 사료는 먹는 양을 봐가며 남기지 않도록 급여합니다.
-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 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합니다.
- 크게 놀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줘 평온을 찾도록 도와주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간 기능 강화제, 비타민제, 수액,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은 잘 보살펴 주도록 합니다.
-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말린 후에 급여를 하도록 합니다.

3. 부상가축 및 죽은 가축의 처리

- 큰 부상을 입은 가축은 신속히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바셀린이나 항생제연고를 발라 상처부위가 덧나지않고 빨리 아물도록 조치합니다.
- 화재로 죽은 가축은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몰하거나 소각시켜야 합니다.

4. 방역대책

- 산불지역의 가축은 연기, 화염,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면역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니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 외부인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농장별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사후조치요령

- 화재발생 축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개축해야 합니다.
- 화재 또는 진화작업으로 변질된 사료는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 산불피해를 입은 야산은 목초를 파종해(겉 뿌림 초지 조성) 토양 유실을 예방하고 사료자원으로 이용합니다.
-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재만 덮인 곳은 물을 뿌려 재를 털어내 주도록 하고 불에 타버린 곳은 사료용 옥수수 등 대체 사료작물을 파종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면세유 사후관리 안내

- ◎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농업용 면세유 등 농림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음

I 농업경영체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성

-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농림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경영체 등록정보가 꼭 필요하고, 정부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가 자율변경 필요
 -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

- 신규등록
 -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인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go.kr>에서 출력가능)
 - * 구비서류: 농지 등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영농사실확인서), 농자재(비료, 농약 등) 구입 영수증 등 경작증명이 가능한 서류
- 변경등록
 - 변경된 날 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기관(농관원)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 콜센터(1644-8778)로 변경 신청
 - 경영주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농지 및 가축시설의 지번·지목·면적·품목·축종, 자경·임차 등 경영체 등록정보 및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등록정보 확인 및 현지조사 실시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각종 행정·공공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정보 검증
- 현지조사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적·품목 등 실경작 상태를 확인
- 등록정보 확인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 경영체 등은 등록정보 변경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처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무료),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콜센터(1644-8778)에서 FAX발급 가능
- *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이용 절차 안내(붙임)

II 농업용 면세유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법인이 사용하는 42개 기종의 농기계에 한하여 농업용 면세유를 지급 가능

-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부정유통자 처벌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2)
(농업인) 감면세액 및 40%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공급중단

□ 농기계 변동(취득, 폐기, 양도 등)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지역농협에 신고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시행 안내

◆ 2020년 1월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농축산물·유기가공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취급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

□ 교육과정 및 내용

인증신청 분야	유기·무농약 농산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유기가공·취급자
교육 이수과정	농산물과정	축산물과정	가공 및 취급과정

※ 신규 인증 3시간, 인증 갱신 2시간 이상으로 구성

□ (교육주기) 1회/2년

○ 인증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만 인정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으로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일률 기준 0.01ppm적용)하는 제도

□ 농업인 준수사항

-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주요 이용화면

1 무인민원발급기 메인화면

발급을 원하시는 증명서를 선택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 기록자가 직을 증명합니다.

주민등록	지식, 토지, 건축	차량
부건복지	농지법률, 농업경영체	가족관계등록부
계약부	법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전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교육계열명 대학교(원) 재학
국제통행	건강보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후,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농업경영체 발급서식 선택

발급을 원하시는 증명서를 선택하십시오.

농지법률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확인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후,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등록조건(개인/법인) 선택

신청 민원인의 등록조건(개인/법인)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개 인

법 인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후,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1	2	3
4	5	6
7	8	9
삭제	0	완료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후,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지문인식

입장을 붙여 아래 그림과 같이 지문이 중앙 상단에 오도록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지문 인식기에 대어 주십시오.

올바른 위치

잘못된 위치

5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후,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내역확인 후 발급

신청내용을 확인하시고 발급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신청증명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법정등록) 확인서	신청부수	1 부
신청인	홍길동		
신청사항			
경영주, 경영주와 농업인 변경이력 표시 농지 식재금지 표시 사육시설 적재량역 포함 표시(연경지번 표시) 직할금 및 정부보조 표시 교육이수 및 후계경영인 표시 면세유류 배정량 표시			
			무료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면,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후, 농업경영체 증명서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붙임 1]

알기쉬운 농업 용어 사전

기존용어	쉬운용어	기존용어	쉬운용어	기존용어	쉬운용어
가식	임시심기	검란기	알검사기	곡과	굽은과일
간벌	숙아베기	견치	송곳니	공동과	속빈과일
객토	새흙날기	사양	치기, 기르기	과경(果經)	열매지름
경운	흙갈이	순치	길들이기	과경(果梗)	열매꼭지
기비	밀거름	노계	늪은닭	과속	농익음
도장	웃자람	돈사	돼지우리	미강	쌀겨
도복	쓰러짐	모계	어미닭	본엽	본잎
만상해	늦서리피해	봉침	벌침	삼시	뚝은감
말칭	바닥덮기	우사	소우리	삼자화과	배추과
복토	흙덮기	웅계	수탉	아접	눈접
부초	풀덮기	유우	젓소	엽채류	잎채소류
비배관리	거름주어가꾸기	육계	고기용 닭	유료작물	기름작물
심경	깊이갈이	착유	젓짜기	포복경	기느줄기
이병수술	병든 이삭을	관정	우물	과피	과일껍질
전작(前作)	앞그루	몽리면적	물덜 면적	과형	과일모양
휴립	이랑만들기	사토	모래흙	근채류	뿌리채소류
간작	사이짓기	한밭	가움	기공	숨구멍
건담직파	마른논씨뿌리기	건담	마른논	낙과	떨어진열매
결속	다발묶기	배수	물빠짐	내피	속껍질
골분	뺏가루	지력	땅심	동작물	겨울작물
만파	늦뿌림	표토	겉흙	두류	콩류
배배양	씨눈배양	한해(旱害)	가움피해	맹아	움트기, 움
병과	병든열매	한해(寒害)	추위피해	발아	싹트기
삼목	꺾꽂이	정지	땅 고르기	방향식물	향기식물
시비	비료주기	관개	물대기	선과	과일고르기
윤작	돌려짓기	살수	물뿌리기	조류	이끼류
재식거리	심는거리	개거	겉도랑	표피	겉껍질
지주	받침대	굴착	파내기	구근	알뿌리
차광	빛가림	도수로	물덜도랑	적립	알숙기
회분	재	수갑	수문	적화	꽃숙기
채종	종자생산	수로교	물길다리	적과	열매숙기
수도	논벼	수리안전담	물사정줄은논	출아	싹나기, 싹트기
이식	옮겨심기	수원공	농업용수공급시설	침지	물에담그기
최아	싹 틔우기	승수로	물받이도랑	하상	하천바닥
침종	씨 담그기	양거	속도랑	치묘	어린모
선종	씨 고르기	양수	물푸기	협과	꼬투리열매
연작	이어짓기	용수로	물도랑	입모	씨 세우기
이앙기	모내는 시기	제당	물독/제방	영지	소금물담그기
수잉기	이삭밴 시기	제체	독 몸체	양토	참흙
훈작	섞어짓기	집수정	물웅덩이	분얼	새끼치기